

# 음식점 위생 등급제

“깨끗하다는 믿음에 안심을 더합니다”



## ★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뭘까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  
(매우우수, 우수, 좋음)

## ★★ 등급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가이드이며, 음식점 홍보 수단으로  
매출상승 효과

## ★★★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급지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지정후 2년간 위생관련 출입검사 면제,  
시설설비 개보수 용자지원

##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실천강령

1. 식품위생교육기관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영업자의 식품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식품위생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우리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3. 우리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4. 우리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공공업무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영업자인 국민을 향해 성심성의껏 봉사한다.
5. 우리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비는 식품위생교육에만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6. 우리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교육운영 실태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에 따르고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우리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차 대민접점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자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 식품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안내문

우선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게 된 영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987.3.28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공급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영업자인 여러분들께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교육받은 교재에는 부록으로 영업자 여러분께서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집이 수록되어 있으니 항상 옆에 두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활용하시면 유용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 관계입니다. 위생교육 및 영업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업자 일선 접점창구이자 업무 수탁기관인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먼저 문의(교재 부록 지회/부 연락처 참조)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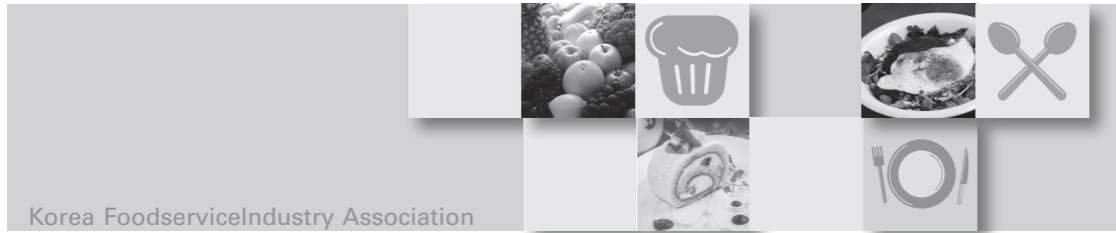
끝으로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도 더욱 성실히 영업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교육받게 될 식품위생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생교육교재

2021 일반음식점 영업자

# Contents



## I. 식품위생법령의 해설

1. 일반음식점 영업	10
2. 시설기준	12
3. 영업신고 제한	18
4. 영업자 지위승계	19
5. 건강진단	20
6. 위생교육	21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22
8. 청소년 행위제한	27
9. 행정제재	29
1) 행정처분	29
2) 과태료	32
3) 과징금	33
10. 벌 칙	35
■ 일반음식점 관련 주요 법령 제도	37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42

# Contents



## II.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 제 1 장 식중독 예방

1. 식중독의 이해	50
2. 식중독 발생현황	53

### 제 2 장 위생관리

1. 개인 위생관리	55
2. 식재료 위생관리	57
3. 작업공정 위생관리	60
4. 시설설비 위생관리	67
5. 흙 위생관리	68
6. 작업 안전관리	69

■ 식품알레르기 이해하기	70
---------------	----

# Contents



## I. 식품위생법령의 해설

### III.

#### 음식업 영업자의 세무·노무관리

##### 제 1 장 세무관리

1. 음식업의 시작 절차	74
2. 우리나라 세금의 과세방식	78
3. 음식업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의 종류와 내용	78
4. 세목별 신고 및 납부기한	79
5. 부가가치세의 계산	80
6. 종합소득세	85
7. 기장의무	88
8. 종합소득세의 절세	89

##### 제 2 장 노무관리

1. 근로기준법	92
2. 4대보험(산재/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97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108

#### 부록

■ 국민신문고 주요 질의 답변집	113
■ 한국외식업중앙회·지회·지부·교육원 현황	120



# I. 식품위생법령의 해설



## 1.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며, 주로 탕반류 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과 일식·중식 및 경양식 형태의 음식점을 말한다.

### ◎ 영업 신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생에 관한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며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고(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는 복합민원사항으로 신고관청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일정한 구비서류에 의거 식품위생법 이외 영업 관련 다른 법령 다시 말해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의 적부 여부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신고 여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필요시 1개월 이내에 시설기준 등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시설조사를 한다.

또한,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고인(영업자)은 건축법,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여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 폐업신고(시행규칙 제44조)

-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영업 신고관청(시군구)에 제출
- 영업신고 폐업과 함께 사업자등록 폐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한곳에만 제출하면 된다(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 ※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신고사항의 변경(「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영 제26조)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그리고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 구비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영업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9,300원(단, 소재지 변경은 26,500원)이며 신규의 경우는 28,000원이다.

### ◎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영 제21조)

영업의 종류	범 위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음(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찻집 등)

영업의 종류	범 위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 허용(한식, 일식, 중식, 레스토랑 등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허용 (유형접객행위 금지)
유형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룸살롱, 카바레, 디스코 클럽 등)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공연행위

일반음식점영업에서도 손님과의 직접적인 유흥행위와 관계가 없는 공연자 예를 들어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나 댄서·무용을 하는 자 또는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등의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연 목적을 위한 무대장치, 조명시설,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갖춘 무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객실내에서는 이러한 공연행위나 이를 위한 무대시설의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시설기준(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 분야별로 업종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분리(벽·층), 구획(칸막이 등), 구분(선, 줄 등)
-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시설 설치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래 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 시설 설치
- 공연을 하려는 일반·휴게·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영업장내에 객석과 구분되게 무대시설 설치(객실 내 설치 금지)

조리장

-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 영업소로서 동일 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 바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 제외)
-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씻는 시설 설치
-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설치
- 1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다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 등을 제조·가공 하려는 경우,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

-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 설비
- 충분한 환기를 시킬수 있는 시설·구조(자연 통풍가능 경우 제외)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 설비

\* 냉동·냉장 식품의 보존온도는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5℃ 이하를 말함

**급수시설**

-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함

**화장실**

-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미설치 가능)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 설치(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에서는 비수세식화장실 설치 가능 -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 설비)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업종별 시설기준**

**일반음식점영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 설치 불가
- 일반음식점의 객실내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 설치 불가
  - 객실의 예외규정 신설(2011. 4.7)
    -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 객실설치가 가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설치**
  -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해당함.
    - ※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 제외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일반음식점은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소는 제외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설치 불가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 설치 가능.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설치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 또는 수상레저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 설치
  -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탱크
  -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건물의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 꼭 받으세요!!!>**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교육대상** : 일반음식점(지하층 66㎡ 이상, 지상 2층 이상부터 100㎡ 이상) 영업주 및 종업원
  - ※ 지상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제외
- **교육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
  - ※ 교육 이수여부 문의 : 각 시도 소방본부 및 관할소방서



### 3. 영업신고 제한

#### ◎ 영업장소의 제한

- 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 영업자의 제한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4. 영업자 지위승계

- 영업의 양도·양수와 같이 영업을 승계하는 자와 승계를 받는 자 간에 영업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을 승계하는 자는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승계 요건별 지위승계자는 다음과 같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라 함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하는 서류사본을 말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이에 해당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 ◎ 승계요건별 지위승계자

요 건 (사유)	지 위 승 계 자
양 도	양수인
사 망	상속인
법인합병	합병 후 존속법인, 설립법인
경매(민사소송법), 환가(파산법), 압류재산의 매각(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법)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 (정락인, 배당채권자 등)

- 행정처분 승계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
  -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음
  -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5. 건강진단

### ◎ 건강진단 대상자, 항목 및 진단 회수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회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회수 : 1회/년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
	2. 폐결핵	
	3. 전염성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 위반 시 과태료 : p.32 과태료 부과금액 참조

## 6. 위생교육

###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과정

일반음식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식품위생과 개인위생, 식품위생법 등)을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교육원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식품위생에 대한 기초적인 제반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의미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신고) 후 당해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본인들로 하여금 국민보건 위생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등 위생관념을 보다 더 확고히 심어주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1986년도에 도입되었다.

#### ▶ 신규위생교육 수료 인정범위

- 신규 위생교육 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기존영업자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신규 위생교육 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기존영업자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아래와 같이 같은 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①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과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동호바목의 제과점영업
  - ②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등

###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과정

각종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1999. 12. 29일자로 폐지되었던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2004. 1. 20일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 되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지회·지부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교육(소집 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한다.

▶ 교육기관

-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한국외식업중앙회
  - 영업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집합교육과 온라인(혹은 모바일) 교육 병행 운영
    - ※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www.foodservice.or.kr) 참조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관련규정 : 법 제44조, 영 제29조, 규칙 제57조[별표17]7호

- 가. 물수건·손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 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영업정지 15일/1개월/3개월).
- 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영업정지 2개월/3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라~마. <삭제>
- 바. 제과점영업자가 [별표14] 제8호가목2)라)(5)에 의하여 조리장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시정명령/영업정지 7일/15일).
- 사. 간판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영업정지 7일/15일).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시정명령/영업정지 7일/15일).

- 자. 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과태료 10만원/20만원/30만원).
-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 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영업정지 7일/15일).
-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운반·진열·보관 : 영업정지 15일/1개월/3개월, 조리에 사용 : 영업정지 1개월/2개월/3개월).
- 타.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일반음식점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자·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영업정지 1개월/2개월/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2) 일반음식점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업정지 1개월/2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영업정지 15일/1개월/3개월)

-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영업정지 15일/1개월/3개월)
-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영업정지 2개월/3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6)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영업정지 2개월/3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파.**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과태료 10만원/20만원/30만원).

**하.** 손님을 피어서 끌어 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영업정지 15일/1개월/3개월).

**거.**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영업정지 1개월/2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너.**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수질검사 기간내 미이행시 영업정지 15일/1개월/2개월,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1) 일부항목 검사 :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시정명령/영업정지 7일/15일).

**리.**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영업정지 15일/2개월/3개월).

**머.** 식품접객영업자는 공통찬통과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버.** 일반음식점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자·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업정지 2개월/3개월/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영업정지 1개월/2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영업정지 15일/1개월/3개월).

**저.**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1) 주재료가 다른 경우(영업정지 7일/15일/1개월).
- 2)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영업정지 7일/15일/1개월).
- 3)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터.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시정명령/영업정지7일/15일).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히.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고. 식품접객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는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노.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 8. 청소년 행위제한

### 가. 개요

- 19세 미만의 자(2021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 유통되는 것과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기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또한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영업자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유해한 약물이란 함은 술·담배·향정신성의약품·마약·환각물질 등을 말하며, 유해업소라 함은 허가·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그리고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과 단란주점영업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 주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집·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주류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표시 의무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5항에 의거,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그 판매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 판매 금지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표시방법

구분	표시문구	표시크기	게시장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 금지	표시문구는 한면이 40cm 이상, 다른 한면이 10c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 표시의무 위반시 처분

구분	위반시	시정명령 미이행시	
		1차	2차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 미이행 영업자	시정명령(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	100만원	300만원

다. 청소년 관련 행위규제 및 행정제재

**식품위생법**

청소년 관련 유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법 제6조)이 우선 적용되는 것과 관련 식품위생법 벌칙 규정에서는 이에 대한 양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 제재로서 다음과 같이 각 위반 유형별로 영업정지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반공익적 사범 성격을 감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고 있다.

**[행정제재]**

- 청소년을 유흥接客원으로 고용하여 유흥接客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영업정지 3개월/영업소 폐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하여 유형별로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의 경우 동법(제54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영업정지·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와 관련 식품위생법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행정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과징금]**

-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 출입 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행위 금지 위반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벌금]**

- 영리 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 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거나 동 행위 알선·매개행위와 영리 또는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9. 행정제재

1) 행정처분

행정주체가 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집행(法執行)으로서 하는 공법 상의 단독행위(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품목류제조정지,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일반기준**

- 둘 이상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

-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
- 위반행위의 차수(1차·2차·3차)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및 법 제19조 위반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처분 기준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수거 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
- 4차 위반의 경우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조치
-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
  -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법§4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법§4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 법§7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이물이 혼입된 것
  - 법§7 위반 : 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37 위반 : 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 법§36 위반 : 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때
  - 법§36 위반 : 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법§36위반 :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행위(p.22 참조)**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법§44②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법§44② 위반 : 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법§44②위반 :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법§44②위반 : 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 법 제4조3항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해당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법 제8조제1항 위반 : 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 2)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로서 행정의무불이행의 경우 부과(건강진단, 위생교육의무 위반 등)

### 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위반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위반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위생교육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영업시설 및 기타

-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자 :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자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식품 등의 조리·포장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자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3) 과징금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총징으로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부담하는 것

### 과징금 산정기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 1. 일반기준

-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다~라(생략)
-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백만원)	1일 과징금(만원)	등급	연간매출액(백만원)	1일 과징금(만원)
1	20 이하	5	14	750 초과 ~ 850 이하	94
2	20 초과 ~ 30 이하	8	15	850 초과 ~ 1,000 이하	100
3	30 초과 ~ 50 이하	10	16	1,000 초과 ~ 1,200 이하	106
4	50 초과 ~ 100 이하	13	17	1,200 초과 ~ 1,500 이하	112



등급	연간매출액(백만원)	1일 과징금(만원)	등급	연간매출액(백만원)	1일 과징금(만원)
5	100 초과 ~ 150 이하	16	18	1,500 초과 ~ 2,000이하	118
6	150 초과 ~ 210 이하	23	19	2,000 초과 ~ 2,500 이하	124
7	210 초과 ~ 270 이하	31	20	2,500 초과 ~ 3,000 이하	130
8	270 초과 ~ 330 이하	39	21	3,000 초과 ~ 4,000 이하	136
9	330 초과 ~ 400 이하	47	22	4,000 초과 ~ 5,000 이하	165
10	400 초과 ~ 470 이하	56	23	5,000 초과 ~ 6,500 이하	211
11	470 초과 ~ 550 이하	66	24	6,500 초과 ~ 8,000 이하	266
12	550 초과 ~ 650 이하	78	25	8,000 초과 ~ 10,000 이하	330
13	650 초과 ~ 750 이하	88	26	10,000 초과	367

**과징금 부과 제외기준**

- 법 제4조 위반(판매 등 금지)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 · 음식물폐기/영업정지 1개월 · 음식물폐기/영업정지 3개월 · 음식물폐기
  -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7일 ·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5일 · 음식물폐기/영업정지 1개월 · 음식물폐기
  - 영업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 · 가공 또는 수입한 것 : 영업정지 1개월 · 음식물폐기/영업정지 2개월 · 음식물폐기/영업정지 3개월 · 음식물폐기
- 법 제37조제2항 위반(영업의 허가 등)
  -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 한 때 :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 법 제44조제1항 위반(영업자준수사항)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 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 묵인하는 행위 :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법 제44조제2항 위반(영업자준수사항)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3차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 과징금 부가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기준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음.

**10. 벌 칙**

**가. 개요**

행정처분청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사법기관에서 행하고 그 적용은 일반적으로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수사관)의 직접수사나 행정기관의 고발 등에 의해 수사과정을 거쳐 검사의 기소절차와 법원(판사)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

**나. 양벌규정**

식품위생법상 벌칙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제100조)

**다. 벌칙의 종류**

- 제93조(벌칙) :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 가공 · 수입 또는 조리한 자
  - 다음의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 다음의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 \*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설피, 사리플

- 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
- 제94조(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 법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제95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 제72조(폐기처분 등) 제1항의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식품 압류, 폐기 명령위반
- 제96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조리사 고용 위반(제51조)
  - 영양사 고용 위반(제52조)
- 제97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영업 및 중요사항 변경·폐업 미신고(제37조제4항)
  - 영업자 지위승계 1개월 이내 미신고(제39조제3항)
  - 무자격자를 조리사, 영양사 명칭 사용(제55조)
  - 관계 공무원의 업소 출입·검사·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2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제36조)
  -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제44조제1항)
  -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 제98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接客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 일반음식점 관련 주요 법령 제도

### 1.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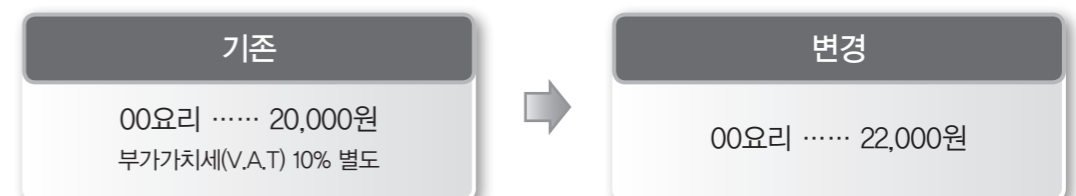
#### ☛ 「최종지불가격」의 개요

- 「최종지불가격」이란?
  - 음식점 등에서 메뉴가격을 표시할 때 손님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가격을 말합니다.
- 시행목적은?
  -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편의 도모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시행시기는?
  - 2013.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표기방법

- 기존의 가격표기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가?
  - 「최종지불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표기 시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음식가격 외 부가세,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기한 업소에서는 이를 음식가격에 환산해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지불 가격 표시 예시〉



**적용대상**

- 어떤 업소들이 적용을 받나?
  - 음식점, 커피점, 주점(유흥, 단란)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급식제외)가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부터 음식가격에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으로 표기한 업소는 기존 방식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미이행시 조치**

- 「최종지불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처분내용은?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됩니다.

**기타사항**

- 중국음식점에서 자장면 5,000원으로 표기하고 표기된 대로 요금을 받고 있는데 부가세를 추가 포함한 5,500원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 아닙니다. 이미 기존부터 음식가격에 부가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받아 오던 업소의 경우는 기존 표기방식 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2. 「식육100g당」 가격표시제**

**「식육100g당 가격표시」 개요**

- 「식육100g당 가격표시제」란?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등심,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시행목적은?
  -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이 업소마다 달라 가격비교가 쉽지 않았는데 이를 100g당으로 통일하여 소비자의 가격비교 편의성 제고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시기**

- 2013.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표기방법**

**식육100g당 가격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 표기의 기준을 100g당 가격으로 통일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100g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100g당 가격표시 예시〉

기존	변경
갈비 1인분 200g ..... 20,000원	갈비 1인분 100g ..... 10,000원
등심 150g ..... 33,000원	등심 100g ..... 22,000원 (1인분 150g ..... 33,000원)

**100g으로 환산하면 “원” 단위가 나오는데 어떻게 표기하는지?**

- 가격표시의 금액기준은 “십원”단위 입니다. 따라서 “원”단위는 버리고 표기하셔야 합니다.

**1인분에 9,900원으로 무한정 제공하는 고기뷔페의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나?**

- 고기뷔페처럼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가격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표기대상**

**표기대상 메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

- 삼겹살이나 등심 등 주로 생고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워먹는 형태의 메뉴들이 표기 대상이 되며, 조리가 완료된 상태로 제공되는 메뉴들은 의무표기 대상이 아닙니다.

〈표시대상 메뉴 예시〉	〈적용제외 되는 메뉴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고기(소고기, 돼지고기, 곰창 등)를 구워먹는 경우</li> <li>•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li> <li>• 요리(샤브샤브 및 닭갈비 등)의 고기 추가 주문 시 제공되는 고기</li> <li>• 애벌(훈제 등)구이 된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탕, 찜, 찌개, 보쌈, 족발(닭발), 육회, 스테이크, 돈까스, 바베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li> <li>• 샤브샤브, 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 제외(단, 추가고기는 표시대상)</li> <li>•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li> </ul>

**미이행 시 조치**

- 「식육100g당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분내용은?
  -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일(2차) - 영업정지 15일(3차)의 행정 처분이 됩니다.

**3. 「옥외가격」 표시제**

**「옥외가격표시」의 개요**

- “옥외”의 인정범위는?
  - 손님이 영업소에 들어가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예를 들어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말합니다.
- 시행목적?
  - 음식점 가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동종 영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시행시기는?
  - 2013.1.3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대상은?
  - 영업장 신고면적이 150㎡(45평)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해당됩니다.

**표시품목**

- 전체 메뉴를 표시해야 하는지?
  - 해당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메뉴 중 최소 5개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메뉴라야 하며,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주문 가능한 최소단위 인원과 가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규격 및 방법**

- 옥외가격 표시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 가격 표시물에 가격과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품목명, 품목별 가격 정보와 무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으며, 규격은 가로 200mm 이상 330mm 이하, 세로 600mm 이하로 표시해야 합니다.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위반 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표시장소**

- 옥외가격표시 장소는?
  -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창문 또는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 집합건물의 고층 또는 지하에 위치하는데 어디에 표시하나?
  - 영업소 이동통로(예: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도 게시 가능합니다.
- 백화점 푸드코트는 어디에 표시하나?
  - 푸드코트 등 별도 출입문이 없는 음식점의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시 조치**

- 건물외부(도로 등)에 “배너”나 “이젤” 또는 “현수막”을 활용해 표기해도 되는지?
  -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 이동가능한 형태의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외부 도로 등에 배너나 이젤 등을 활용한 표시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식재료 중 24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관련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1. 원산지 표시대상

**표시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표시품목**

품 목	표 시 대 상
쇠 고 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함께 표시
돼지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닭 고 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오리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양 고 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쌀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 쌀 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찌쌀을 포함한다
배추김치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 및 고춧가루를 포함하여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콩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하는 콩
수산물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해당 수산물 가공품 포함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 국내산 쇠고기 식육 종류

- 한우 :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으로 갈색 소
- 육우 : 육용종, 교잡종, 젓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젓소로 고기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 젓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젓소로 우유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 ※ 식육가공품 관련 용어정의 :

-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등을 말함〉
- 양념육류(육지물) : 식육에 식염, 조미료, 향신료 등으로 양념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육함량 60%이상의 것을 말함(뼈가 붙어 있는 것도 포함)
  - 분쇄가공육제품 : 식육(장기류는 제외한다)을 세절 또는 분쇄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성형하거나 또는 동결, 절단하여 냉장, 냉동한 것이나 혼연, 열처리 또는 튀긴 것으로서 햄버거패티류, 미트볼류, 가스류 등을 말함(육함량 50%이상의 것)
  - 갈비가공품 : 식육의 갈비부위(뼈가 붙어있는 것에 한함)를 정형하여 향신료 및 조미료 등으로 양념하고 혼연하거나 열처리한 것을 말함.
  - 식육추출가공품 : 식육동물성 소재를 원료로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나 이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함)

### 2. 원산지 표시방법

####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나만 사용할 경우 그 하나만 표시)
-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표시판”을 별도 제작하여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원산지표시판 표제 : “원산지 표시판”
  - 표시판 크기 : 가로 × 세로(또는 세로 × 가로) 29cm × 42cm 이상
  - 글자크기 : 60포인트 이상
  - 글자색 :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표시위치 :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같은 경우 모든 게시판이 해당)의 옆 또는 아래에 부착,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 부착
- 취식(取食)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

장소별로 원산지게시판 또는 원산지표시판 부착.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원산지 매뉴판 반드시 제공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 글자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기

**냉(동)장고 보관 축산물도 원산지 표시**

-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동)고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 축산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 ※ 영수증, 거래명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 수입검사필증 보관

**3.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축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축산물을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함
- 원산지 표시대상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포장재에 표시
  -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음

- **국내산의 경우(국내산 쇠고기의 경우는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
  -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양념치킨(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 **외국산의 경우(해당 국가명 표시)**
  - 소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미국산), 양념치킨(미국산)
- **원산지가 다른 축산물을 섞은 경우**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 고추장돼지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국내산 뼈에 수입산 갈비살을 붙인 경우**
  - 소갈비 : 소갈비(호주산) 또는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 섞음)
  - 돼지갈비 : 돼지갈비(미국산) 또는 돼지갈비(갈비뼈 국내산과 돼지고기 미국산 섞음)

**쌀, 배추김치, 콩**

품목	구분	표시 방법 (예)
쌀	국내산	밥(쌀 : 국내산), 누룽지(쌀 : 국내산), 죽(쌀 : 국내산)
	외국산	밥(쌀 : 미국산), 죽(쌀 : 중국산)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밥(쌀 : 국내산과 중국산 쌀 섞음)
배추김치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	배추김치(중국산) * 해당 국가명 표시
콩	국내산	두부(콩 : 국내산), 콩국수(콩 : 국내산)
	외국산	두부(콩 : 중국산), 콩국수(콩 : 미국산)

**수산물**

- 국내산의 경우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함
-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함

- **국내산, 원양산의 경우**
  - 광어회(국내산), 참돔구이(원양산), 광어매운탕<원양산(태평양산)>
- **수입산의 경우(수입국가명 표시)**
  - 참돔회(일본산), 장어구이(중국산), 추어탕(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모듬회(광어 : 국내산, 우럭 : 중국산, 참돔 : 일본산),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기타 표시사항**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 사용합니다.

- 다른 원료(품목)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

- 햄버거스테이크(쇠고기 : 국내산한우, 돼지고기 : 덴마크산)
- 모듬회(광어 : 국내산, 우럭 : 중국산, 참돔 : 일본산)

- 국내산 원료(품목)를 사용한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 이를 생산한 시·도 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호주산)

**잘못된 원산지 표시사례**

-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벨기에산, 칠레산)
- 배추김치(국내산/중국산), 미꾸라지(국내산, 중국산)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국가명을 나열해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로 “혼동표시”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으로 ‘고발’조치됨

**4. 원산지 표시위반시 처벌**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팻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예시) -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 국가명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등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수입국가명을 나열하고 실제로는 판매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수입국가명을 판매하는 경우
- 원산지 위장판매 :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예시) - 수입국가명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내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된 수입산을 꺼내 주는 경우

**위반시 처분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2년간 2회 이상 위반 시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추가 부과(최대 3억원까지)
- 원산지 미표시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2회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

-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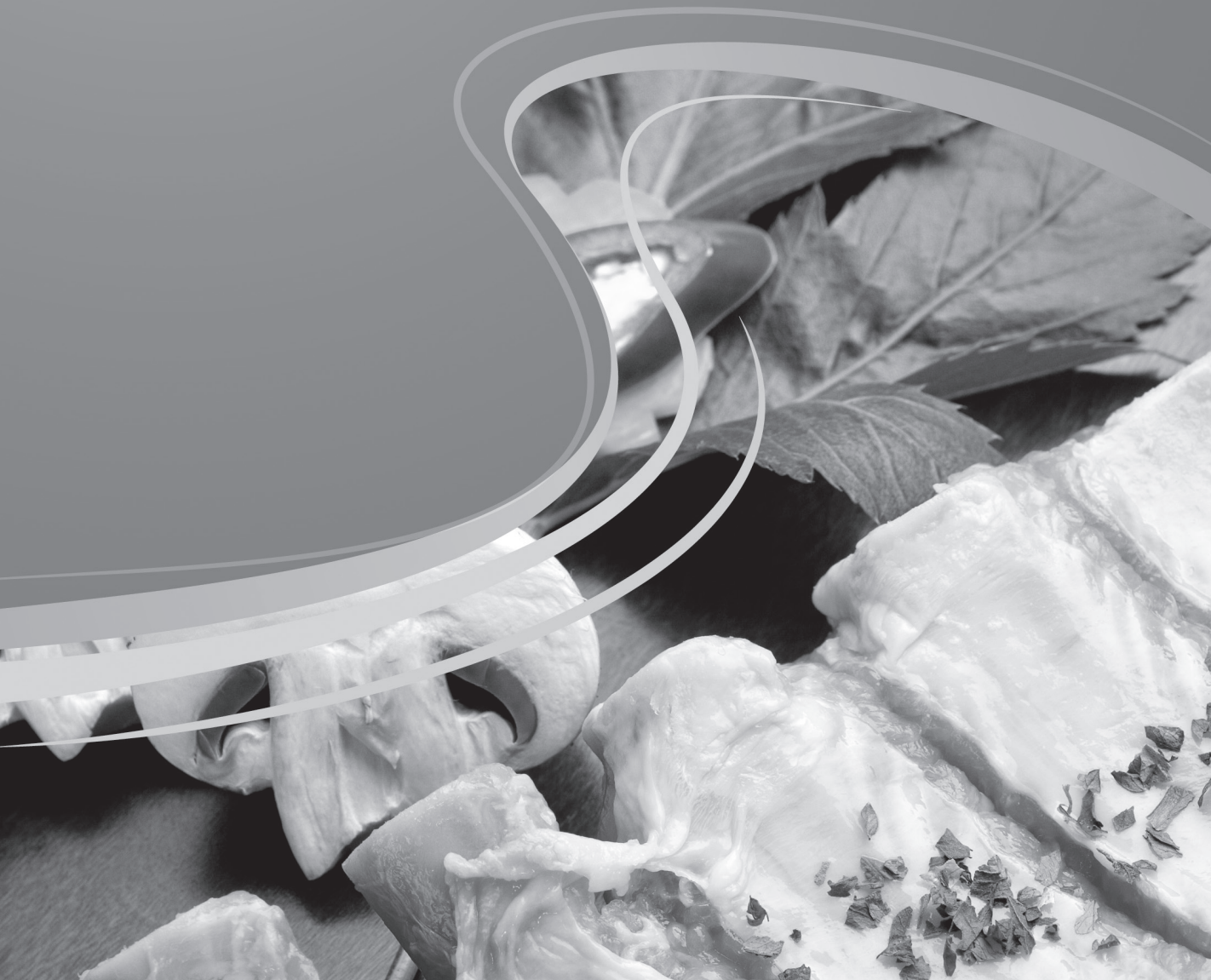
위 반 내 용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60만원	품목별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60만원	품목별 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내 용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15만원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5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15만원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나 목12)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 Ⅱ.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 II.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 제 1 장 ▶ 식중독예방

#### 1. 식중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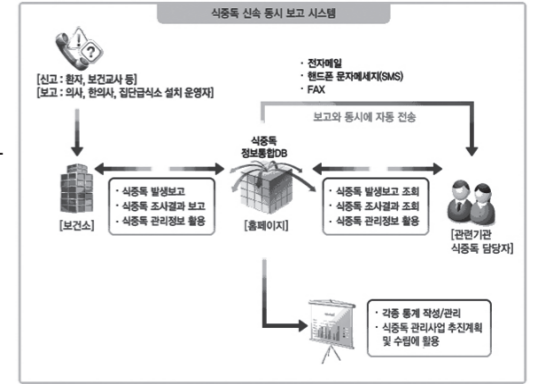
-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집단식중독”을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2019-94호)

#### 〈Q&A〉 식중독 증세는?

- 음식물을 섭취한 뒤 빠르면 1~5시간, 길게는 3일~7일 내에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식중독균 종류에 따라 오심, 구토, 설사,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 오심 : 구토가 급박한 느낌을 말하며, 보통 구토가 오기 전에 먼저 나타나거나 혹은 구토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현상
- 주의) 식중독 증세는 식중독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Q&A〉 식중독 관리 및 보고체계

1. 식중독 의심 신고·보고 → 특별자치시장·시·군·구(식품위생부서)
  - (의무) 의사,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자율) 음식점, 의심환자
2.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 (감염부서·식품위생부서)
3. 식중독균 검출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 (식품위생부서)



- 식중독은 원인물질에 따라 미생물학적 식중독(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원충성 식중독)과 화학물질 식중독(화학적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으로 분류된다. 원인물질에 따라 각각 다양한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 〈표〉 식중독 균의 분류

분류	종류	원인체
미생물 식중독 (30종)	세균성 (18종)	감염형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병원성대장균(EPEC, EHEC, EIEC, ETEC, EAEC), 바실루스 세레우스, 쉬겔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캄필로박터 제주니, 캄필로박터 콜리
		독소형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바이러스성 (7종)	- 노로, 로타, 아스트로, 장관아데노, A형간염, E형간염, 사포 바이러스
	원충성 (5종)	- 이질아메바, 램블편모충, 작은와포자충, 원포자충, 쿠도아
자연독 식중독	동물성	복어독, 시카테라독, 패류독
	식물성	감자독, 원추리, 여로 등
	곰팡이독소	황변미독, 맥각독, 아플라톡신 등

분류	종류	원인체
화학적 식중독	고의 또는 오용으로 첨가되는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본의 아니게 잔류, 혼입되는 유해물질	잔류농약, 유해성 금속화합물
	제조·가공·저장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지질의 산화생성물, 니트로아민
	기타물질에 의한 중독	메탄올 등
	조리기구·포장에 의한 중독	녹청(구리), 납, 비소 등

〈 Q&A 〉 식중독은 미생물에 의해서만 발생하나요?

- 국내 식중독은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에 의한 발생이 많으나 최근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독초, 독버섯, 복어 등 자연독 식중독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 판단 기준 : 조사결과 경로를 확인·추정하여 식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음식물(물 포함) 섭취에 의한 감염형 또는 독소형 질환 확인
- 조사 결과 **특정장소**(영업장 또는 급식소 등)에서 제공한 **음식물에서 원인 확인** 또는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및 원료 폐기

※ 확정(Definite) : 원인병원체 판단기준을 만족시키고 역학적 연관성 3요소를 모두 만족

〈 Q&A 〉 음식점 조리식품의 식중독균 기준·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 음식점 등에서 조리된 식품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대장균, 캄필로박터 제주니/콜리,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등 식중독 균이 음성이어야 하며, 장염비브리오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100/g 이하,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10,000/g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조리과정 중 가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가열 후 조리한 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은 100/g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식중독 발생현황

가. 식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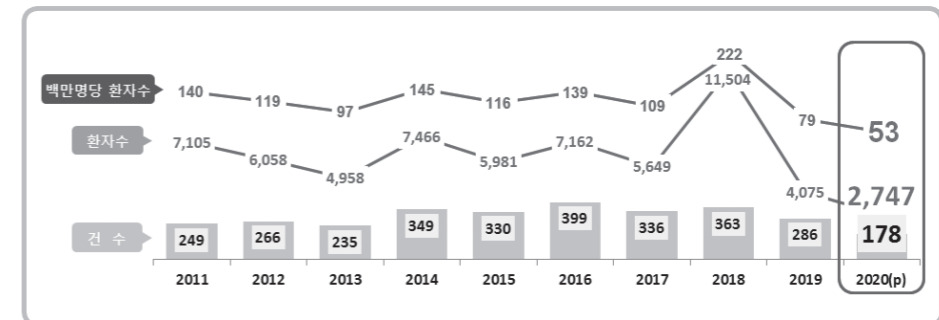
○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은 매년 2조8천억원 이상으로 추산 (‘13,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경제적 손실비용(추정) : (‘08) 25,157억원 → (‘10) 26,726억원 → (‘12) 27,949억원

나. 최근 식중독 발생현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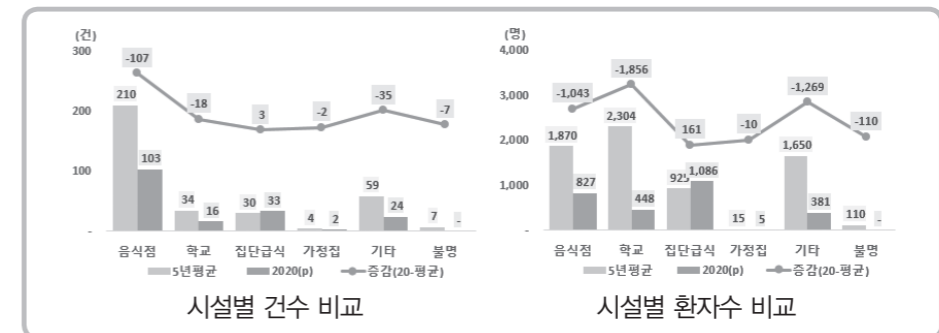
○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 (최근 10년)

- ‘20년 식중독 발생건수는 178건, 식중독 환자수는 인구 100만명당 53명으로, 식약처가 식중독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환자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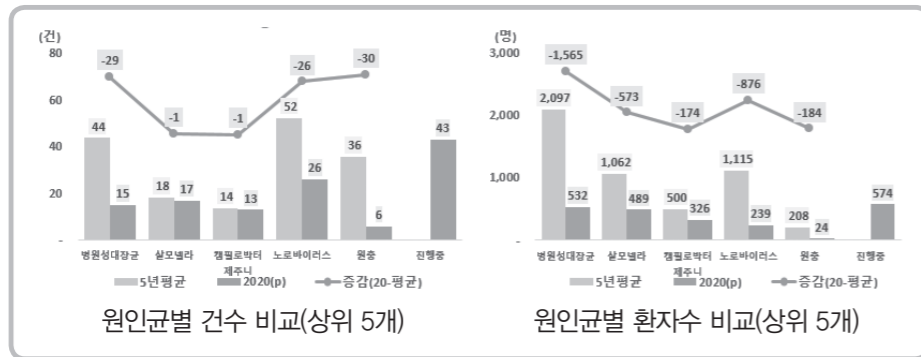
○ 원인시설별 발생 현황 (최근 5년)

- 식중독은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수는 학교에서 가장 높게 발생
- ‘20년 음식점 식중독 발생건수는 103건으로 시설 중 가장 많았으나, 지난 5년 평균 210건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환자수도 1,870명에서 827명으로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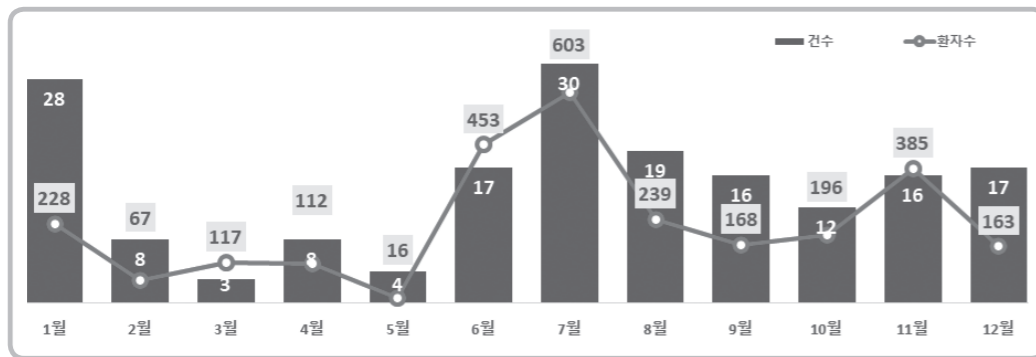
○ 원인균별 발생현황 (최근 5년)

- 발생 건수 기준 노로바이러스 > 병원성대장균 > 원충 > 살모넬라 > 캄필로박터 제주니 순으로 나타남
- 음식점은 원충 > 병원성대장균 > 노로바이러스 > 살모넬라 > 장염비브리오 순임



○ 월별 발생 현황 (2020년)

-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9월인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이 매우 높음
- 여름철에는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주로 발생



- ※ 2020년 식중독 통계는 12월 31일 집계된 잠정치로 최종 원인·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일부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 값으로 부분의 합계가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2020년 식중독 발생의 감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손씻기 등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음식점 관계자들의 위생 수준 향상, 음식점 이용자 수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됨

< Q&A >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만 발생하나요?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나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세이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 가급적 굴 등 패류는 날로 섭취하지 말고 익혀먹기
  - 날로 먹는 과일·채소류는 3회 이상 깨끗한 물로 철저히 세척
  - 지하수는 살균·소독하거나 반드시 끓여서 음용
  - 어패류는 중심부 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 손은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기구 등은 열탕 또는 염소 소독제 등으로 살균·소독
  -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사람 간에 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함

< Q&A >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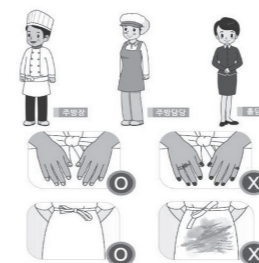
- 식품을 충분한 온도와 시간(육류 75℃·어패류 85℃, 1분 이상)으로 조리하지 않은 경우
- 조리 후 음식을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
- 오염된 기구와 용기, 조리 기구를 소독·세척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세척 소홀, 개인 질병, 식품 취급이 부주의한 경우
-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제 2 장 위생관리

1. 개인 위생관리

가. 복장관리

- 개인 위생관리는 건강검진 및 복장관리(위생모, 마스크, 위생복, 위생화), 장신구, 손 청결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매일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구토·설사 등 식중독 증세가 있는 종사자는 조리, 배식 등 작업에서 배제한다.



<Q&A> 복장[위생모, 마스크, 위생복, 위생화]

1.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위생모를 써야 합니다.
  - ☞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 위생복, 앞치마를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 합니다.
3. 매니큐어를 하지 말고 밧 장신구(목걸이/반지/팔찌/귀걸이 등)의 착용을 금지 합니다.

### 나. 건강진단

-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1회/년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며, 결과를 확인하여 조리 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한다.(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Q&A〉 조리에 참여할 수 없는 질병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다음 질병에 걸린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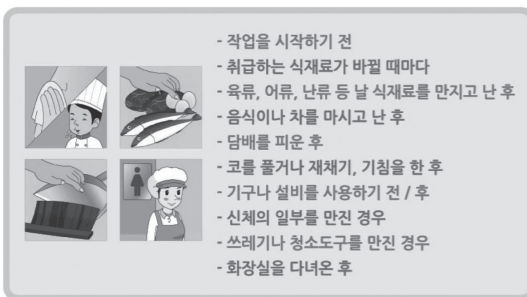
#### 〈Q&A〉 건강진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올바른 손 위생관리

- 손 씻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그림 1>과 같이 식재료 취급 전/후, 기구나 설비를 사용하기 전/후, 작업 공정이 바뀌었을 때, 화장실에 다녀온 후, 흡연 후 등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손 씻기는 습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림 1〉 손을 세척해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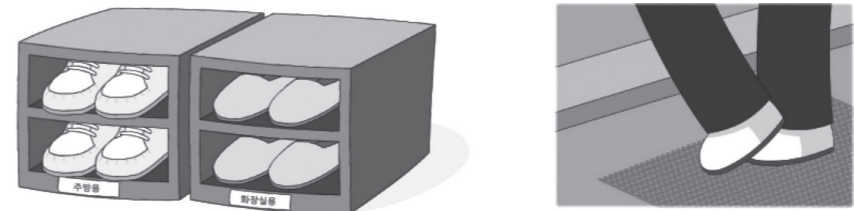
〈그림 2〉 올바른 손 씻기 방법

- 손은 모든 표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손 씻기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손을 통하여 전파

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 라. 일일 건강 체크, 화장실 사용 주의사항

- 영업주, 위생관리책임자는 매일 영업을 시작하기 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설사, 복통, 구토 등)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고 작업을 하도록 한다.
- 화장실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전용 신발을 갖추어 사용하고, 주방 출입구에 소독발판을 놓아 외부에서 세균이 주방으로 옮겨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림 3〉 신발 구분 사용 및 소독발판 이용

## 2. 식재료 위생관리

### 가. 식재료 구매

- 식재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하여 구입하며, 표시가 정확한 제품을 구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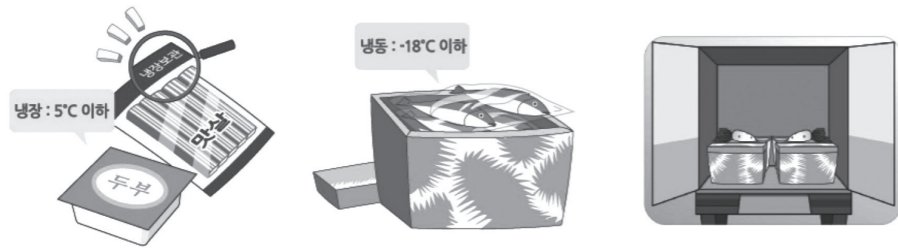
제품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li> <li>■ (타법 의무표시사항 예시)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교환, 환불</li> <li>■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li> <li>■ 부정·불량식품 신고: 국번없이 1399</li> <li>■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고객상담실: ○○○-○○○-○○○○</li> </ul>
식품유형	○○○(○○○○○○○*) *기타표시사항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식품, ○○시○○구○○로 ○○길○○	
유통기한	○○년○○월○○일까지	
내용량	○○○g	
원재료명	○○, ○○○○, ○○○○○○, ○○○○○○, ○○○○○○, ○○○, ○○○○○○, ○○○, ○○○○○○ ○○*, ○○○*, ○○*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명 및 함량	○○○(○○mg)	
용기(포장)재질	○○○○○	영양성분*
품목보고번호	○○○○○○○○○○○○○○-○○○	(주표시면 표시 가능)

〈Q&A〉 식재료 검수절차 및 유의사항?

- 청결한 복장, 위생장갑 착용 후 검수 시작
- 식재료 운송차량의 청결상태 및 온도유지 여부 확인
- 표시사항, 유통기한, 원산지, 중량, 포장상태, 이물혼입 등 확인
- 제품 온도 확인(냉장식품 5°C이하, 냉동식품 언상태유지(-18°C이하), 생선 및 육류 5°C 이하, 일반채소는 상온, 신선도 확인 및 전처리채소 5°C이하)
- 검수 끝난 식재료는 곧바로 전처리 또는 냉장·냉동보관(외부포장 제거 후 조리실 반입)
- 검수기준에 부적합한 식재료는 자체규정에 따라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조치내용을 검수일자에 기록, 관리

나. 식재료 구입 후 확인

- 식재료 구매단계에서는 식재료 차량의 청결 상태 및 적정 보관온도 여부를 확인한다.



\* 식재료는 채소류·육류·어패류·가공식품 등이 구분·보관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차량 내부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입고된 식재료는 조명이 밝은 장소에서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 뒤 검수한다.
- 검수할 때 확인사항 - 제품의 온도, 포장상태, 유통기한, 신선도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업체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 일반음식점에서는 산란일자 표시한 달걀 구입·조리·제공
  - \* 달걀 껍데기 표시 :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 \* 산란일자 : 산란일이 10월12일이면 1012로 표시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 서류로 확인할 사항은 거래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급판정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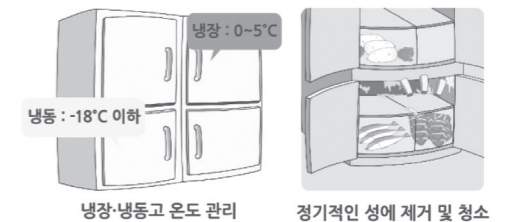


- 기준에 부적합한 식재료는 부적합품 보관용기에 보관 후 반품 처리하고, 냉장·냉동 식재료는 즉시 냉장고 또는 냉동고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다. 식재료 보관 및 저장

- 좋은 식재료를 철저한 검수를 거쳐 받아도 적절한 관리와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재료가 오염·변질될 수 있다.
  - 식재료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냉장/냉동고 온도확인 및 청결관리, 보관 기준, 구분 보관 등을 준수한다.



\* 손이 닿는 냉장고 손잡이, 선반 등에 세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세척·청소가 필요하다.

보관기준	해당 온도기준	보관방법
냉장	0 ~ 5 °C	냉장고 보관
냉동	-18 °C 이하	냉동고 보관
상온	15 ~ 25 °C	상온창고
실온	1 ~ 35 °C	냉장고 또는 상온창고
건냉소/서늘한 곳	0 ~ 15 °C	냉장고 또는 상온창고
습기/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통풍이 잘되는 곳	0 ~ 15 °C	냉장고 또는 상온창고



- 개봉한 캔제품의 내용물은 세척·소독된 용기에 옮겨 냉장 보관하고, 건조 창고에는 식재료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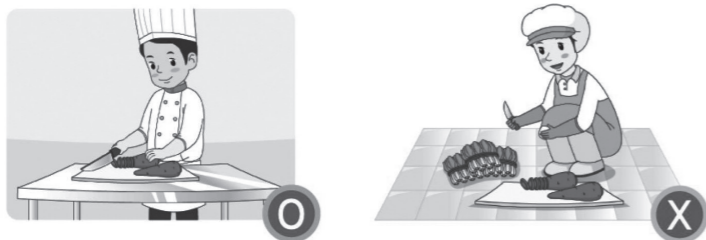


〈그림 5〉 건조 창고에 식품을 저장하는 요령

### 3. 작업공정 위생관리

#### 가. 교차오염 방지

- 식재료의 전처리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서 실시하고, 칼·도마 등 식기구·용기, 고무장갑과 앞치마는 〈그림 6〉과 같이 구분 사용한다.



〈그림 6〉 칼, 도마, 고무장갑 및 앞치마의 구분 사용

#### 〈Q&A〉 고무장갑, 위생장갑은?

- 고무장갑과 위생장갑은 식품에 사용이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품의 경우 식품 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지 더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싱크대에서 채소와 어·육류를 세척할 때는 채소류 → 육류 → 어패류 → 가금류 순으로 처리하며, 싱크대 사용 전 또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척·소독하여 사용한다.



〈그림 7〉 세척 순서

#### 나. 전처리

- 샐러드와 같이 원재료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생채소와 과일은 소독·세척하여 제공한다.

- 소독은 소독액을 제조하고 5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서 2~3회 행군다.

\* 식재료의 소독은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등의 제품을 사용하고, 100ppm(염소계 소독제의 경우)의 농도로 소독한다.



〈그림 8〉 생채소·과일류 소독방법

○ 해동은 5℃이하의 냉장고에서 해동하는 방법, 흐르는 물에서 해동하는 방법,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하는 방법이 있고, 한번 해동한 식품은 세균증식이 될 수 있으므로 재냉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9〉 해동방법

다. 조리

○ 음식물을 조리할 때에는 중심의 온도가 75℃(어패류 85℃)에서 1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가열하여 완전히 익히고, 조리 후에는 용기에 덜어서 맛을 본다.

※ 동물 내장에서 서식하던 식중독균이 도축과정에서 식육 및 분쇄육 내부까지 오염되어 덜 익힌 경우 용혈성요독증후군(장출혈성대장균 O157:H7, 독소에 의해 적혈구 파괴 및 신장 세포 사멸로 신장 기능 손상 등) 발생



〈그림 10〉 중심온도 확인 및 위생적인 맛보기

○ 육류, 어패류, 계란, 샐러드는 잠재적인 위험 식품으로 조리 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잠재적 위험 식품 : 수분의 함량이 높고 단백질의 함량이 많아서 세균이 쉽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식품



〈그림 11〉 잠재적 위험 식품

○ 툷·모자반의 올바른 조리방법

• 툷과 모자반은 어떤 해조류인가요?

- 툷과 모자반은 갈조류의 일종으로 주로 완도, 제주지역에서 서식 또는 양식되고 있습니다.
- 칼슘, 철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 조리방법



• 툷·모자반 섭취 시 왜 주의해야 하나요?

- 툷·모자반은 무기비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비소는 물·공기·토양, 동·식물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물질로서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큰 물질입니다.
- 무기비소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툿과 모자반에서 무기비소를 제거하기 위해, 물에 불리고 끓는 물에 삶아 섭취 하여야 합니다.
- 툿·모자반 이외의 해조류도 주의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에서는 무기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라. 고객에게 제공할 때

○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는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5℃ 이하) 보관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Q&A〉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제7호러목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에 의하여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조치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제7호러목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음식 재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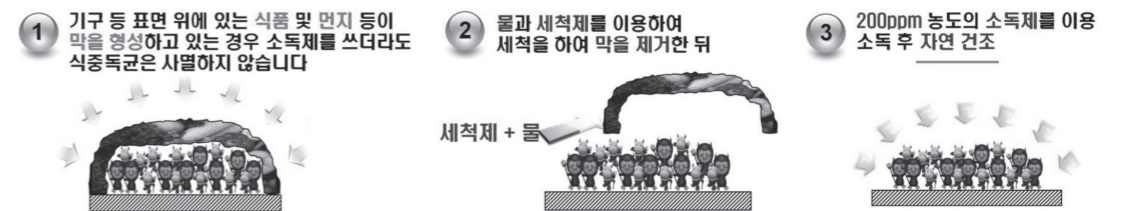
〈 음식물 재사용 기준 〉

-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위생적으로 취급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음**

- ①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과일류
- ②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 땅콩, 호두 등 견과류
- ③ **건조된 가공식품**으로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  
땅콩,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크림 도포·충전 제품 제외)
- ④ 떡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보온밥솥을 통해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마. 세척 및 소독

○ 사용한 조리기기는 반드시 세척·소독 후 보관하여야 한다. 기구·용기 등의 세척·소독 방법으로는 표면의 식품 찌꺼기를 제거하고 물과 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한 다음 200ppm 농도의 소독제를 이용, 소독한 후 자연 건조 시킨다.



〈그림 12〉 기구·용기 등의 세척·소독 방법

○ 세척제는 사용 용도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져 있어, 1종은 2종 및 3종(또는 2종 → 3종)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3종은 2종(또는 2종 → 1종)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Q&A> 세척제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

- 세척제의 용도,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입한다.
-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 세척제를 임의로 섞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염소계와 산성계 약품을 함께 사용하거나 혼합해서 사용하면 유해가스 발생).
- 세척제는 반드시 식품과 구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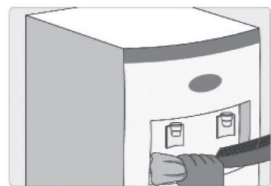
- 조리용 소도구는 세척·소독하여 자외선 소독고 또는 전용 용기에 보관한다.
- 행주/손가락/젓가락/물컵 등은 열탕으로 소독하고, 칼/도마/용기/도구/작업대 등은 소독제로 소독, 컵은 세척 후 입구가 자외선 등을 향하게 하여 자외선 소독한다.
- 음식물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한다.

**<Q&A> 세척·살균을 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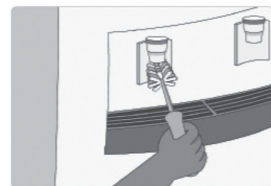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과태료 50만원(2017. 1. 4 개정)

**바. 먹는 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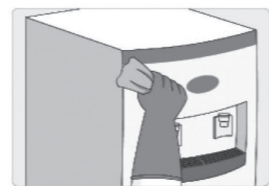
- 정수기는 업체에 정기적인 필터 교체 및 내부 청소를 정기적으로 의뢰하고, 상수도는 물탱크의 수질관리 및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물받이 분리 후 청소



식수꼭지 청소



정수기 주변 청소

- 지하수의 경우 정기적인 음용수 검사를 의뢰(1년마다 일부 항목, 2년마다 전 항목 검사)하여 음용수 성적서를 갖춘다.

**4. 시설설비 위생관리**

**가. 방충·방서/바닥/환기 관리**

- 주방은 각종 음식물 취급하여 위생해충을 모이게 하는 공간이므로 방충·방서, 포충등 설치, 정기적 방역활동이 필요하다.



방충문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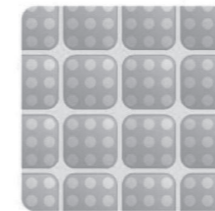
포충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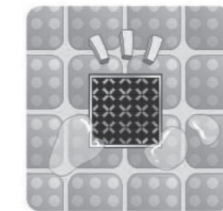
정기적 방역

- 바닥은 내수성 재질을 사용하고, 배수구에 덮개를 설치하여 음식물 찌꺼기로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바닥이 파손된 경우 즉시 보수하여 파손된 부분에 세균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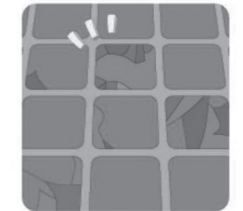
\* 하수도는 배수구 및 주변 청소로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



내수성 재질 사용



배수구 덮개 설치



파손 시 즉시 보수관리

- 주방은 충분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하고, 환기팬은 정기적으로 세척·소독을 한다.
- 기구·용기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규격'에 적합하고,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한 제품 사용
- 주문·제작한 기구용기를 사용할 경우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
  -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II.공통기준 및 규격, 1.공통제조기준,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나. 소독 시설/청소 · 소독/정리정돈

- 자외선 소독고는 자외선 램프의 청결과 점멸 상태를 확인하고 꺼진 램프는 교체 후 사용한다.
  - \* 소독고 안의 물컵 등 식기도구는 마른상태에서 소독하며, 적정시간(약 40분) 동안 살균한다.
  - \* 컵의 방향은 컵의 입구가 자외선을 향하게 놓는다.
- 바닥/벽/천정, 냉장고, 조리기구 등 시설/기기 등은 정기적인 청소 및 세척 · 소독을 한다.



자외선 소독고



전기 살균 소독기



바닥/벽/천정 정기적 청소



시설/기기등의 세척 · 소독

## 5. 홀 위생관리

### 가. 식탁/양념통 위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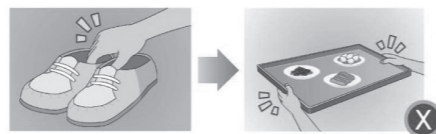
- 고객 식사 후에는 식탁에 있는 남은 음식물은 바로 처리하고, 식탁은 소독제로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 양념통은 매일 청소를 하고, 내용물도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 나. 수저 보관함/일회용 휴지 위생관리

- 수저의 세척 · 소독과 더불어 수저 보관함의 청소 ·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일회용 휴지는 전용 용기에 넣어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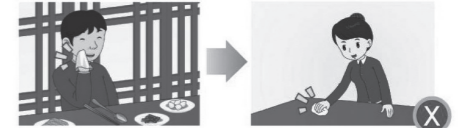
### 다. 주의사항

- 식당에서 다음의 사항은 특히 주의한다.
  - 홀에서 신발을 정리하던 손으로 손 세척 없이 음식 나르기
  - \* 가급적 신발정리 도구(집게)를 비치하여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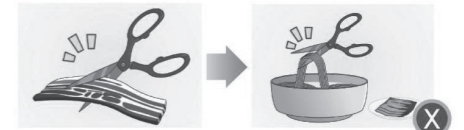


신발정리하던 손으로 음식 나르기

- 고객이 사용한 물수건으로 식탁 닦기
  - \* 손에 있는 세균이 물수건을 통해 식탁으로 오염될 수 있다.
- 생고기 자른 가위로 냉면이나 김치 자르기
  - \* 생고기에 존재할 수 있는 세균이 냉면으로 교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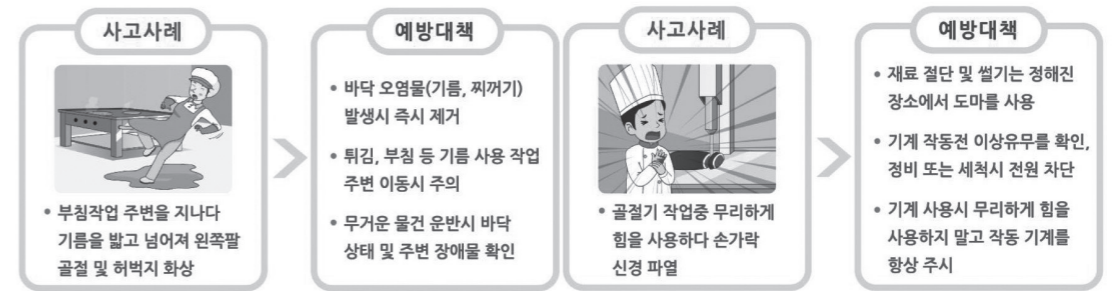
손님이 사용한 물수건으로 식탁 닦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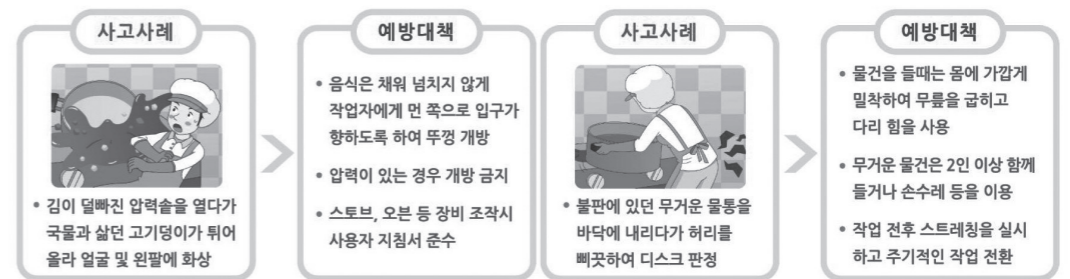
생고기 자른 가위로 냉면이나 김치 자르기

## 6. 작업 안전관리

### 가.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 칼날(베임 · 절단) 사고



### 나. 화상(뜨거운 물) 사고, 근골격계질환(무거운 물건) 사고



## 식품알레르기 이해하기

### I 알레르기와 원인

알레르기란 외부 자극이나 노출 물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과민반응을 말합니다. 주로 두드러기, 기침, 콧물, 재채기, 호흡곤란, 위장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전신증상인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분 류		종 류	
생물학적 요인	알레르겐	흡입알레르겐	집먼지 진드기, 화분, 동물의 털, 바퀴 등
		식품알레르겐	우유, 계란, 견과류, 해산물, 밀 등
		기타	곤충(개미, 벌)의 독, 약물, 라텍스 등
	미생물	무유세균, 진균 등	
화학적 요인	공기오염 물질	실외오염물질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 황화산화물 등
		실내오염물질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 물질	살균, 방향족 아민, 염료, 금속, 보존제, 방향제, 시멘트 등	
물리적 요인		온도, 습도, 압력 등	

자료출처 : 사)환경위해성예방법협회,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실태

### 2 식품알레르기란?

- 식품알레르기란, 식이 형태로 인체에 들어온 특정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정상인과는 달리 그 면역계가 과잉으로 반응하여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알레르기는 호흡기, 소화기, 피부, 전신적 반응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가벼운 반응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주요 증상은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기도폐쇄, 천식, 장염, 아나필락시스 등을 들 수 있고 드물게는 극소량의 섭취만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 식품알레르기는 식품에 있는 일부 단백질에 반응해서 일어납니다. 식품 속의 단백질은 대부분 조리 과정이나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만,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사람은 불완전 분해된 일부 단백질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 국민의 20~25%가 식품알레르기를 경험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성인의 1~2%, 영유아의 6~8%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소아의 35%와 천식소아의 10%가량이 식품알레르기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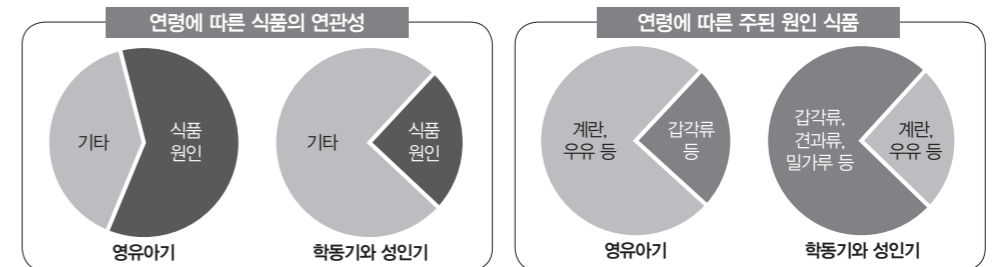
### 3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흔한 식품항원(식품알레르겐)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 원인이 되는 식품이 달라지는 것은 흔히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르고, 어릴 때에는 원인이 된 식품에 대해 커가면서 면역관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영아 / 유아기	학동기	성인기
우유 계란 콩 땅콩	우유 계란 콩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조개류 밀	밀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자료출처 : 사)환경위해성예방법협회,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실태,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제2판)















자료출처 :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외, 식품알레르기 대담협, 2012

- 식품알레르겐은 분류학적으로 비슷한 식품들 사이에 서로 교차반응이 있습니다. 콩과식품에 속하는 대두, 땅콩, 콩 등이나 갑각류에 속해 있는 새우, 게, 가재 등은 서로 교차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알레르기 교차반응 식품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	교차반응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식품	교차반응률
콩류 땅콩	그외 콩류 완두콩, 렌즈콩, 대두	5%
견과류 호두	그외 견과류 브라질넛, 캐슈넛, 헤이즐넛	37%
생선 연어	그외 생선 청새치, 가자미	50%
갑각류 새우	그외 갑각류 게, 바닷가재	75%
곡류 밀	그외 곡류 보리, 호밀	20%
우유	육류	10%
	양, 염소의 젖	92%
	말의 젖	4%
꽃가루 자작나무, 돼지풀	과일/채소 사과, 배, 멜론	55%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	교차반응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식품	교차반응률
복숭아 	그 외 장미과 과일 사과, 자두, 체리, 배 	55% 
멜론 	그외 과일 수박, 아보카도, 바나나 	92% 
라텍스 라텍스 장갑 	과일 키위, 아보카도, 바나나 	35% 
과일 키위, 아보카도, 바나나 	라텍스 라텍스 장갑 	11% 

자료출처 : Scott H.Sicherer, J Allergy Clin Immunol 2001; 108:881-90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2013

#### 4 주요 식품알레르기 종류

##### • 식품 유발성 아나필락시스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형태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철저하게 원인 식품이 제거된 식사로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준비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거력이 없는 경우에도 처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전 반응이 경미한 경우라도 재발생 시 심각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식품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 • 식품의존성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

특정 식품을 먹고 운동을 했을 경우에만 발생하며,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와 동일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운동 후 식품을 먹고 발생하기도 합니다.

##### •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중 발생률이 가장 높고 식품과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가려움, 건조, 피부 갈라짐, 진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 식품 제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식품을 제한하면 영양불량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5 식품알레르기 표시 이해하기

##### • 표시대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발성분 중 '알류(기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에 대해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표시방법에 따른 알레르기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 Ⅲ. 음식업 영업자의 세무·노무관리



## Ⅲ. 음식업 영업자의 세무·노무관리



### 제 1 장 세무관리

#### 1. 음식업의 시작 절차

- 외식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정하고 실내장식, 집기, 비품의 구입 등 실질적인 준비절차와 함께 아래와 같은 행정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절 차	관련 기관	비 고
1. 위생교육	- 집합 :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교육원(16개소) - 온라인 :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 신규영업자: www.nfoodedu.or.kr 기존영업자: www.ifoodedu.or.kr	지역별 교육일정 등 세부내용 등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원 및 지회·부문의 (교재부록 지회·부 주소록 참조)
2. 영업신고	관할 행정관청 (시·군·구청)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 (p.10~21 참조)
3.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장 관할세무서	하단 참조

#### 가. 사업자등록 신청

- 영업신고를 마친 후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개시를 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늦게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빨리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사업자 등록을 해야 POS시스템이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가능하다).

#### ▶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신청서(p.91 참조)
- (2) 영업신고증 사본
- (3)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신청 시 원본)

#### (1) 사업자등록신청 시 주의할 점

- 간이과세 적용신청 : 사업자가 사업개시 후 공급대가(수입금액)가 간이과세자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 과세자는 적용 신청을 해야 적용 받을 수 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세율 1.5% (1년에 한 번 신고)
  - 일반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세율 10% (1년에 두 번 신고)
- 간이과세 배제기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①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에 해당되거나 업종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② 사업자 명의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 과세유형의 전환 :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매년 1.1 ~ 12.31) 신고한 공급대가(신고기한 1.1 ~ 1.25)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인 7.1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 (2)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환급 신청

- 일반과세사업자는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 ※ 조기환급이란 : 인테리어공사, 주방시설공사, 간판공사, 집기 비품의 구입 등 시설투자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공급받은 달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그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이 된다.

-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조기환급 신청을 한다. 권리금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 권리금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소득세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3) 공동사업자 신청**

-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공동사업자는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 한 가구가 여러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명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사업자 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시에는 소득금액의 누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여러 군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4) 사업자금명세**

- 사업자가 창업하는 사업에 투입된 자금내역을 기재한다. 자기자금으로 창업한 경우 자기 자금란에 기재하고 금융기관이나 타인(부모형제 포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타인 자금란에 기재한다. 사업자금명세란에 기재한 금액에 따라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5) 업태종목의 선택**

- 주업태 : 보통 '음식점업'이 된다.
- 주종목 : 사업자가 경영하는 음식점의 중요한 종목을 다음에서 선택

코드 번호	종 목		단순경비율 ('19년 귀속)	소득률
	세 분 류	세세분류		
552101	일반 음식점업	• 한식 음식점업	89.7	10.3
552102		• 중식 음식점업	88.4	11.6
552103		• 일식 음식점업	86.7	13.3
552104		• 서양식 음식점업	86.0	14.0
552105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 출장 음식 서비스업	84.4
552107	기타 음식점업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치킨 전문점	86.1	13.9
552109	기관구내식당업	• 기관구내식당업	90.0	10.0
552108	기타 음식점업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1.0	9.0
552301	기타 음식점업	• 제과점업	89.9	10.1
552303	비알콜음료점업	• 비알콜 음료점업	85.6	14.9
552305	기타 음식점업	• 그외 기타 음식점업	87.1	12.9

**나. 확정일자 신청**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신청 대상자는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 다음의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차료 × 100) ⇨ 월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임

구 분	적용대상 환산보증금	소액임차보증금우선변제		
		우선변제대상	우선변제액	
수도권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의 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의 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및 부산시 제외)	5억4천만원 이하의 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기타지역	3억7천만원 이하의 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옹진군 등 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지역 제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보증금우선변제와 더불어 계약갱신요구권(10년), 임대료인상제한(5%), 권리금회수기회보장 및 후순위채권에 대한 대항력 등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우리나라 세금의 과세방식

-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금은 자진신고·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산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여야 한다. 자진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가 해당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과소신고가산세 : 10%, 무신고가산세 : 20%,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 : 40%, 무납부가산세 : 연 약 9.12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요구하거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 ※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 전년(전기)대비 신장율 → 당기수입금액 / 전기수입금액
- ▶ 부가가치율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 ▶ 신용카드비율 → 전체 매출액 중 신용카드매출액 비율
- ▶ 불성실 세금계산서 수취상황 파악

### ※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 신고소득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상황 확인

## 3. 음식업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의 종류와 내용

•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 종합소득세 • 법인세(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 개인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 지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	•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 4. 세목별 신고 및 납부기한

- 자진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각 세목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다.

###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6개월씩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 ▶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1기 예정	4.1 - 4.25
	1기 확정	7.1 - 7.25
	2기 예정	10.1 - 10.25
	2기 확정	1.1 - 1.25
간이과세자	1.1 ~ 12.31 (1년)	다음해 1.1 ~ 1.25

- 다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여 납부한다.
  - ▶ 간이과세자도 직전과세기간(직전연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납부세액으로하여 7월 2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 ▶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 ▣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과세기간으로 하며 그 해의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5. 부가가치세의 계산

###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유통단계에 참여하여 추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즉, 자신이 만든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세금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여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정식 1인분의 원가가 8,000원이라 가정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재 료 비	: 4,000원
기타관리비	: 4,000원
마 진	: 2,000원
합 계	: 10,000원인 정식 1인분은
부가가치세	: 1,000원을 더하여
총	: 11,000원을 받아서

그 중 1,000원은 세무서에 납부 한다.

위의 세액 1,000원 중 재료를 구입하며 지급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한다.

- ② 그러나 위에서 10,000원만 받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면 정식 1인분 10,000원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0,000원 \times (100/110) = 9,091원(정식 1인분의 값)$   
 $10,000원 \times (10/110) = 909원(부가가치세)$
- ③ 결국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 예정 마진 2,000원(25%)에서 부가가치세 909원을 빼고 실제 마진은 1,091원(13.6%, 재료비 및 관리비에 대하여)으로 낮아지게 된다.

### 나. 부가가치세의 계산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매출세액에서 매입하면서 부담할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예시〉

음식점에서 '정식' 메뉴를 11,000원 받는 경우(공산품 2,200원, 면세품 2,000원을 구입함)

정식 1인분 10,000원의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1,000	… ①
매입세액(시장에서 매입한 2,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	… ②
의제매입세액 (매입액 2,000원 × 9/109)	165	…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발행액의 11,000원의 1.3%)	143	… ④
납부할 부가가치세{①-(②+③+④)}	492	… ⑤

#### (1)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과세물품이나 용역을 구매(공급받는 경우)하는 경우 더 지급한 부가가치세이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2)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및 광물(소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사업자가 받은 계산서상에 매입세액은 없지만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대상사업자

- 면세인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을 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과세사업자만 대상이다. 다만, 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하여야만 공제 대상이 된다.

#### 2) 공제율

- 음식업의 경우 8/108(법인 6/106,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9/109)

#### 3) 한도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표준별로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구분	과세표준 기준	공제한도(2015년~2021년)	
		음식점업	
개인 사업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5%	
	과세표준 2억원 이하	6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	
법인사업자		40%	

4) 증빙서류의 제출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청한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다).
  - 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3) 사업용신용카드제도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사업용신용카드사용액의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하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이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 사업용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여도 매입세액이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 : 사업자는 사용할 신용카드를 지정해서(최대 50개까지 등록가능)국세청 차세대시스템(<https://www.hometax.go.kr>)에 등록 후 사용한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인 개인사업자(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음식점업이 해당됨)와 간이과세자가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직불카드영수증)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이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라 한다. 연간 1,000만원을 공제한도로 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5) 사업용 계좌의 사용

-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거래의 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결제하거나 결제 받아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 6월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거래대금의 명확성이 입증되고 지급비용의 관리가 명백해질 뿐만 아니라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아 각종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의 절세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매출 증가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매출세액은 줄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 받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철저히 받거나 신용카드사용을 일반화 하여야 절세가 가능하다.

다. 부가가치세 세율

-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 일반과세자 세율은 10%의 단일세율이다.
  - ▶ 간이과세자 세율은 1.5%(15% × 10%)이다.

## 라. 부가가치세 신고와 절세

### (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는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납부세액을 줄이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철저히 받는다.

### (2) 실제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 실제로 거래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높은 율의 가산세가 추징된다.

### (3)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 (4) 부가가치율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부가가치율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부가가치)을 매출액으로 나눈 금액이다. 즉, 마진율이다. 부가가치율이 적정하지 않으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수정신고 권장을 받을 수 있다.

### (5) 신용카드발행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총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신용카드발행비율이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금액은 빠짐없이 신고하고 그 비율이 적정한가 확인한다.

### (6) 물품 구입은 일반과세자로부터 한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구입을 하여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7)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만들자.

- 보통의 경우 전화요금, 통신요금, 전기료 등을 납부해도 증빙서류로 지로영수증을 받게 된다. 이 지로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로영수증에 사업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 기관과 협력하여 조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6. 종합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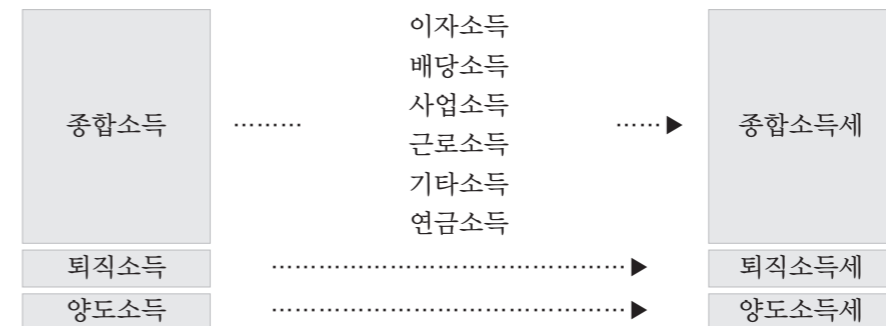
### 가. 종합소득세의 의의

- 종합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 만약,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결손)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결손 금액이 큰 경우는 이듬해 이후로 이월해서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 나. 소득의 범위

-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 ■ 소득의 종류



### 다. 소득금액 합산의 방법

- 종합소득금액은 납세자별(거주자)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부부간에 합산을 하거나 가구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금액 누진에 신경을 써야 한다.

### 라. 종합소득세의 계산

-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다.

#### (1) 기장을 한 경우

- 사업에 관련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이때 총수입금액은 부가 가치세 신고금액(1기, 2기 합산)에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를 더한 금액이며 필요 경비는 원재료, 부재료비, 인건비, 소모품비, 전기요금, 가스·수도요금 등 사업상 투입된 모든 원가와 비용을 말한다.

- 장부의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뉜다.

**!! 절세방안 :** 음식점의 경우 가능한 한 기장을 하여야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음식점의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실제 소득율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 (2)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 과세관청은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세한 사업자가 기장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부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한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단순경비율제도의 내용

수입금액(=총매출액)에서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비율(단순경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한다.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천6백만 원 미만

##### ▶ 기준경비율제도의 내용

매출액에 대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경비 몇 가지는 증빙이 있는 경우 인정을 하고,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만큼 인정을 한다.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소득금액} = \text{총 매출액} - \text{기본적인 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실제 지출한 기본적인 경비란 **매입경비**(고정자산매입비용 제외)와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천6백만원 이상

### 마.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6%~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 종합소득세율

구 간	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38%	19,400,000원
3억 초과 5억 이하	40%	25,400,000원
5억 초과	42%	35,400,000원
10억 초과	45%	65,400,000원

※ 세액계산 예시 : 과세표준 30,000,000원, 세율 15%  
 $(30,000,000 \times 15\%) - 1,080,000 = 3,420,000$ 원

**!! 절세방안 :**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과세표준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따라서 한 세대가 여러 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경영자 명의로 하되 누진세율에 신경을 써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 7. 기장의무

### 가. 복식기장 의무자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총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산세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나.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중·소규모 이하의 개인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이 제정·고시한 장부를 말한다.
- 간편장부대상자(복식기장의무자 미만의 규모)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식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8. 종합소득세의 절세

### 가.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사업자가 기장을 하면 자신이 수입한 금액에서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외식업자의 경우에도 기장을 하여 자신의 실질적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나.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하여 관리한다.

- 증빙서류는 기장의 기초자료이다.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관리해서 기장을 해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다. 신고는 반드시 한다.

- 기장을 하여 신고하든 기장을 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율로 신고하든 소득세신고는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20%~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하면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하여 저율로 부과된다(연 9.125%).

### 라.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한다.

-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1)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 2)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3)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장을 별도로 기장하지 않아도 된다.
  - 4)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마.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하자.

- 현재와 같이 불경기가 계속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를 기초로 신고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0년 이내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바. 기장을 하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자.**

- 기장의 기초는 증빙서류이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기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증빙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진실성과 사실 여부를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사업을 위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라도 세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증빙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 정규증빙서류의 수수와 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이외에 일반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다.

$\text{증빙불비가산세} = \text{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times 2\%$
---

-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해당된다.
  - 접대비의 경우에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020년도까지는 1만원 초과) 반드시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 과세당국은 신고서류를 분석하여 정규증빙서류를 받은 실적이 저조하면 불성실 사업자로 인정하여 수정신고를 요구하거나 조사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013.06.28 개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b>1. 인적사항</b>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자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b>2. 사업장 현황</b>							
업 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사이버물 명칭			사이버물 도메인				
사업장 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 명세		
	m <sup>2</sup>	m <sup>2</sup>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통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전자 세금 계산서 (e세로)	회원가입 신청 여부	[ ]여 [ ]부	사용자아이디(ID)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6~20자) * 온라인 신청 회원과 ID 중복방지를 위해 적으신 ID앞에 영문이 첨부되어 등록됩니다. qt[xxxxx] : 세무서 신청, qh[xxxxx] : 홈택스 신청			
	전용메일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세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용메일 이용 동의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동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 아래 전자우편주소로 초기 비밀번호가 발송되니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제 2 장 노무관리

### 1.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임금, 근로시간, 휴가등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정한 법령(강행적 효력)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법률적 효력이 없음)

#### 가. 적용 범위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됨
- 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규정만 적용됨. 즉, '부당해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임금',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 일부 조항은 적용배제
-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은 제외)

#### 나. 근로계약

-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할 수 있되(계약직)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無期)계약근로자로 전환됨
- 근로계약 체결시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는 근로조건 이하로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 근로계약체결 변경 시,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명시 하여 교부하여야 함

음식점의 경우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은데, 이때 이에 대한 법정 제수당 포함하는 연봉제(또는 포괄월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함 ※ 서식1 : 「포괄임금 근로계약서」(p.111) 참조

#### 다.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해고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대상에서 제외 됨)
-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복직,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등 사용자의 불이익이 대단히 크므로 신중히 하여야 함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함.(서면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 다만,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서면통지한 것으로 봄

음식점의 경우,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요리솜씨나 근무태도등은 채용시에는 잘 파악할 수 없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하는 경우에 부당해고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최초 근로계약시 단기간(1~3개월)의 시용기간을 운용함으로써 부당해고의 분쟁 없이 원활한 노무관리를 할 수 있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계속 갱신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고, 만약 이때 근로계약갱신거절을 하여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라. 임금 및 시효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정기불원칙, 직접불원칙, 전액불원칙, 통화불원칙)

-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마. 최저임금**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하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족하게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에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만이 포함되므로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이 포함되어 최저임금을 상회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위반임
-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하며, 수습기간(3개월까지) 동안에는 최저임금을 90% 적용(단, 단순노무직은 제외)할 수 있음

	구분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1시간기준)	8,590원	8,720원
	일 급(8시간기준)	68,720원	69,760원
	월 급(*209시간기준)	1,795,310원	1,822,480원

\* 209시간 = (1주40시간+주휴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208.57시간

**바. 퇴직금**

- 상시 종업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퇴직금 계산방식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1개월분) 평균임금이고,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없음.
  -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속기간부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향후 2년간(2012.12.31)까지는 정상적인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되고,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4인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100%를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주택구입, 의료비등 긴급한 일시금 수요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시 기왕의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7.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줄어든 경우
8.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 의무화 됨
- 구두상으로 월급 또는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상 지급 기일(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단,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금으로서 효력은 인정되지는 않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사업주는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0.5.20. 선고, 2007다90760)

모든 사업장의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강제규정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월급을 동종업계 보다 많이 지급해 주는 대신 퇴직금이 없다” 라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음에 주의할 것



### 사. 금품청산

-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잔여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
-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부에 진정/고발을 할 수 있음
- 퇴직금 및 잔여금품의 청산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2할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아. 근로시간, 휴가, 휴일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며, 근로자 동의 있더라도 연장근무(휴일근로 포함)는 1주일에 12시간 이내에서만 가능(5인 이상 사업장 2021.7.1부터 적용) 단, 1주일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5인 이상 사업장 2022.12.31까지 허용)
- 모든사업장은 1주일에 1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여성근로자의 경우 청구가 있으면 월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부여해야 함
-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대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1년 미만 근무자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에 대하여 개근한 월수 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단,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 및 연차휴가 대체사용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임)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무수당, 야간(밤 10시 이후~다음날 오전 6시 까지)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무수당,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각 각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여 지급하여야 함(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 자. 취업 최저연령

-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의 소지 없이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 차. 재해보상

- 근로자가 근무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 제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함

- 재해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 보상방식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도입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산재보험료만 납부하고 보상은 국가에서 행하고 있음

### 카.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에 다 명시하지 못한 근로조건 및 사업장 복무수칙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10인 미만 사업장은 임의사항이나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함
-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만약 기존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음

## 2. 4대보험(산재/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 가. 산재보험

#### ■ 적용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 적용됨
  - 상용직, 임시·일용직 모두 적용 대상

#### ■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

- 성립신고 : 사업개시일(종업원 1인 이상 고용일) 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이라도 보험가입 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
- 보험료 납부 : 월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4대 보험료와 함께 통합 고지하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 납부 시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20인 이상)도 함께 납부하여야 함.

- **보험료 산정** : 월별 보험료는 '월평균보수액'으로 산정하며,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입·퇴사 시채용 시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산정 후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정보 및 월평균보수'를 신고해야 함.
- **보험료 정산** :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지급한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 따라서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는 '전년도 직원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고용보험 자격취득 대상이 아닌 월 60시간 미만자 및 외국인(임의가입)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음식업 산재보험료율**

구분	①산재보험	②임금채권부담금	③석면피해부담금
보험료율	9.0/1000 (출퇴근재해요율 1.0/1000포함)	0.6/1000	0.03/1000 (상시근로자 20인 이상만 적용)

※ 단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였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대 0.3/1000을 경감함.

■ **산재보험료 산정(예)**

산정사례	음식점에서 근로자가 2인이고, 월평균보수 합계액이 400만원(200만원*2명)인 경우
산재보험료	① 월 산재보험료 : 400만원 * 9.0/1000 = 36,000원/월 ② 월 임금채권부담금 : 400만원 * 0.6/1000 = 2,400원/월 ③ 월 석면피해부담금 : 400만원 * 0.03/1000 = 120원/월 ④ 월 산재보험료 합계 : ①+②+③ = 38,520원/월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

■ **재해보상**

- 근로자의 출퇴근 및 업무수행 중 부상, 질병, 사망, 장애 발생에 한하여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

-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지급받던 평균임금의 70%), 장애급여(장애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일분~1,474일분),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을 보상함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책임이 면제됨

■ **시효 등**

-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청구할 권리는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함
- 1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납 보험료의 추징과 별도로 재해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50%(단, 보험급여추징은 납부의무 보험료의 5배 한도 이내임)를 추징함
-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10%를 추징함 (단, 보험급여추징은 납부의무 보험료의 5배 한도 이내임)

나. **고용보험**

■ **적용**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됨.  
단, 고용보험 제외대상 외국인(H-2, F-4 등),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다만, 일용근로자 및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신고대상)

■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

- 성립신고 : 사업개시일(종업원 1인 이상 고용일) 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험료 납부 : 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은 산재보험과 동일함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보험요율(16/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2.5/1000 : 근로자 150명 미만의 경우)로 구성되며, 이 중 실업급여 보험요율의 1/2에 해당하는 8/1000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는 매월 급여지급 시에 근로자 임금에서 0.8%를 원천공제 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음식업(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율(2019.0.1부터 적용기준임)

구분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	보험료율계
	근로자	사업주		
	8 / 1000	8 / 1000		
보험료율	16 / 1000		2.5/1000	18.5 / 1000

■ 고용보험료 산정(예)

산정사례	- 음식점에서 근로자가 2인이고, 월평균보수 합계액이 400만원 (200만원*2명)인 경우
고용보험료	① 월 실업급여 보험료 : 400만원 * 16/1000 = 64,000원/월(근로자 32,000원 부담) ② 월 고용안정 보험료 : 400만원 * 2.5/1000 = 10,000원/월(사업주 부담) ③ 월 고용보험료 합계액 : ①+② = 74,000원/월

■ 고용보험 급여제도

- 실업급여 지급 :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함
- 실업급여는 받던 급여의 60%(단, 2021년은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를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한 급여를 실직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

구분	1년 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 기준임.

▶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

-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④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 총 4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하고 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 또한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①채용당시보다 근로조건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 ②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③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④사업장 이전이나 전보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⑤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휴가나 휴직을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⑥임신·출산에도 불구하고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⑦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주 지원제도 :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음식사업주가 신청 가능한 지원금은 휴업지원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이 있음

■ 피보험자 자격관리

- 고용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의 신고가 요구되는데, 따라서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시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함(위반시 과태료 대상)

■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사무 처리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무처리 능력보완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기준 하에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을 인가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사업주에게는 무료로 보험사무를 처리해 드리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 실적에 대하여 일정한 교부금을 지급받게 됨.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보험사무위탁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무 위탁이 가능한데, 이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대행기관사무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 국민연금

### ■ 적용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임.  
단, 60세 이상 근로자 및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월 8일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및 보험료 납부

-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 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의 90/1000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중 근로자의 기여분 45/1000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 45/1000을 합하여 납부하는 것임
- 기준보수월액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소득월평균액을 당해년도 7월에서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함(사용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하여야 함)

### ■ 가입자 자격 관리 및 연금급여

-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가입자 자격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 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 라. 건강보험

### ■ 건강보험 적용

- 1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이외의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적용통보서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
-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기본보수월액에 6.86%(근로자 3.43%, 사업주 3.43%)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되,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50%에 해당하는 3.43%를 원천공제 하여, 사업주 부담분 3.335%를 합하여 납부
-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에는 건강보험료의 11.52%에서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
- 사용자는 매년 3월 중순까지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 및 보험급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퇴직시 보수 총액통보서를 신고하여야 함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함

## 마. 중소기업체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하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지원 제외)
- 보험료지원 보수액은 220만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신규가입근로자 : 정상보험료의 80%

*신규가입근로자란?	생애 최초가입자 또는 1최근 1년 이내 직장가입 이력이 없는 자
------------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  
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은 2020년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월 평균 보수액이 219만 원 이하(일용직은 일당 100,500원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50,000원/월(4인 이하 사업장은 20,000원/월 추가) 지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근로자(H-2, F-4 등)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대상임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주 소정 근로시간	지원금액	월근로일수	지원금액
주40시간이상 상용근로자	5만원	22일 이상	5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4만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만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3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만원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2만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만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10일 미만	미지원

■ 지원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지원신청서 및 일자리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문의/1588-0075, (국번없이) 1355, 1350

바. 자영업자 고용보험

■ 제도 내용

- 자영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 할 때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1.22.부터 확대 시행
- 0~49인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임의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 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입 및 납부

① 가입 대상 및 방식

-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및 상시근로자 49인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유로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 가입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까지 허용됨
- 가입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함.

②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가입시 선택한 기준보수 × 2.25%한 금액을 매월 고지
-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구분하며, 가입시 선택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보험료 금액 및 이후 실업급여 금액의 기준이 됨

☞ (월 보수액 등급 찾기)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서식자료찾기 > 고시·규정·세칙 > 검색창 > 적용 및 부과 업무 관련 고시에서 조회 가능

■ 기준보수 등급 및 월보험료, 실업급여액

등급	기준보수월액	월 고용보험료(2.25%)	월 실업급여
1	182만원	40,950원	1,092,000원
2	208만원	46,800원	1,248,000원
3	234만원	52,650원	1,404,000원
4	260만원	58,500원	1,560,000원
5	286만원	64,350원	1,716,000원
6	312만원	70,200원	1,872,000원
7	338만원	76,050원	2,028,000원

※ 매년 기준보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자영업자 실업급여 요건 및 기간

- 최소 가입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적자지속, 매출감소, 건강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액 60%를 120일~210일까지 수급
- 65세 이후에 자영업업을 개시한 사업주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노력

■ 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구 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특례

① 가입대상 및 방법

- 가입대상(임의가입)
  -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업주 본인
- 가입신청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② 보험료 산정 납부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 : 고시된 12개 등급 중 선택

구분	2020년(원)		2021년(원)		
	등급	기준보수 월액	일 평균임금	기준보수 월액	일 평균임금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일)	1등급	2,061,600	68,720	2,092,800	69,760
	2등급	2,480,301	82,677	2,519,430	83,981
	3등급	2,899,002	96,633	2,946,060	98,202
	4등급	3,317,703	110,590	3,372,690	112,423
	5등급	3,736,404	124,547	3,799,320	126,644
	6등급	4,155,105	138,504	4,225,950	140,865
	7등급	4,573,806	152,460	4,652,580	155,086
	8등급	4,992,507	166,417	5,079,210	169,307
	9등급	5,411,208	180,374	5,505,840	183,528
	10등급	5,829,909	194,330	5,932,470	197,749
	11등급	6,248,610	208,287	6,359,100	211,970
	12등급	6,667,320	222,244	6,785,730	226,191

- (월 보수액 등급 찾기)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서식자료찾기 > 고시·규정·세칙 > 검색창 > 적용 및 부과 업무 관련 고시에서 조회 가능

- 산재보험료율 : 직종별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
- 산재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액 부담
  - ※ 산재보험료는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해 보상

-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
- 단,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장애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는 적용 제외

###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 가. 채용 요건 및 절차

##### ① 내국인 구인 신청

- 외국인근로자(음식사업장의 경우 고용특례자만이 채용가능)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전 14일 이상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인터넷 워크넷(<http://www.work.go.kr>) 신청가능)

#####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알선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내국인 구인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3월 이내에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기 위한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

#####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 발급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가능사업/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함(음식점은 해당 업종임)
- 일정기간(14일) 내국인 구인노력하였음에도 내국인인력 미채용
- 내국인 구인신청 2개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 이직시키지 않을 것
- 내국인 구인신청 5개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을 것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제외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과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 대상자에 한함)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함

#### 특례고용확인서의 유효기간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음식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수에 대해서 특 고용가능확인서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고용 허가 절차없이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음

####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 인원 기준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가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가인원
5人以下	2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인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4인 이하	21인 이상	10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5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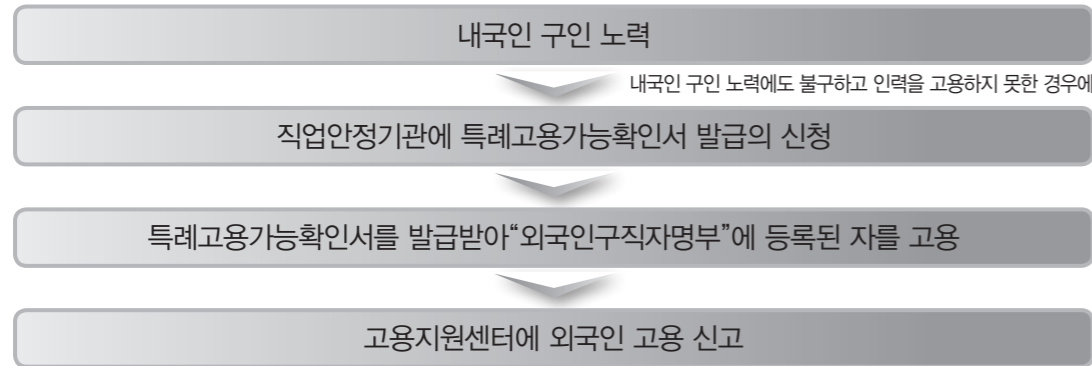
##### ④ 고용가능 외국인 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특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자

##### ⑤ 근로개시의 신고

- 특례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하거나 근로를 개시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근로 개시” 신고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도



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사항

① 외국인 근로자

- 취업 후, 취업단체 또는 업체, 개인 등에 고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개시 신고

② 외국인을 고용한자

■ 신고사유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 고용된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 신고기한

- 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식 1]

(외식업)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견본)

‘사업주’와 ‘근로자’는 외식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함.

1. 근무장소 : \_\_\_\_\_ 2. 담당업무 : \_\_\_\_\_

3. 주요근로조건

- ① 근무시간 : \_\_\_\_\_ 부터 \_\_\_\_\_ 까지, ② 휴게시간 : \_\_\_\_\_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한다. 단, 외식업 특성상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한다.
- ③ 주휴일: 주휴일은 1주간 만근한 경우 **매주 1회** (일요일을 원칙으로 협의 후 별도로 정함.)
- ④ 휴 가: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 규정에 의함.

4. 수습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초 3 개월간**은 근무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 후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②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순노무직 근로자(찌빙, 주방보조, 배달)의 경우에는 **감액 후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 되어야 함**] (‘18.3.20. 시행)

5. 급 여 : 월급 \_\_\_\_\_ 원 (일급 \_\_\_\_\_ 원, 시급 \_\_\_\_\_ 원)

- ① 본 급여에는 외식업특성상 제2호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의거 연장·야간·휴일근무 등 초과 근로에 대한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 임금임을 확인하며, 임금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합 계
근무시간						
급여 (원)						

[ 예, 연장수당 산정 : 통상임금(기본급) ÷ 209h(5인 미만 226h) × 연장근로시간 × 1.5(1.0) ]

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0% 가산 지급 및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

- ② 급여는 (매월 일부터 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일**에 현금 또는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 ③ 연차휴가는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수당은 차감될 수 있다.

6. 휴일 및 야간근로의 동의 : 업무특성상 1주 12시간(연소근로자는 1일 1h, 1주 5h,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은 1주 6h)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연장근로에 동의합니다.

7. 퇴직절차 : ‘을’은 개인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해지 할 수 있다.
  - 잦은 결근/지각/조퇴 등 근태불량으로 월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단, 연락두절 상태로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간주한다.)
  - 고객으로부터 친절, 음식 맛, 청결 등의 문제로 월 3회 이상 항의를 받은 경우,
  - 업무 외적인 질병·부상, 비자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월간 7일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귀책사유를 유발한 경우,
- ② '갑'은 정당한 사유로 '을'을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 개인정보제공 : '을'은 개인정보 [서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피부양자 포함), 주소, 전화번호]를 관련법에 의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동의서명 : \_\_\_\_\_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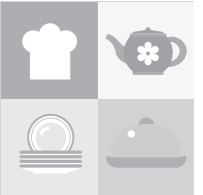
10.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관계 법령 및 복무지침, 관례 등에 의한다.

20 년 월 일

사 업 주	사업장명		근 로 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체류자격: )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전 화	
			서면교부	확인서명	(인)

부록

국민신문고 주요 질의 답변집



Q 1. 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평상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침액 등을 통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p.15 참조)
  -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 마스크 미 착용에 대한 지도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위기경보 단계	투명 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평상시	투명 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사용 가능
경계, 심각단계	투명 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사용 불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

Q 2. 일반음식점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생맥주를 배달 할 수 있나요?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의 조리식품(생맥주 포함)을 배달을 원하는 손님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배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관련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접객

객업소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

**Q 3.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의 간판에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업종명을 표시해야 하나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7.식품접객업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사목에서는 ‘간판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업종명을 필수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표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 3.식품접객업 15.위반사항에 따라 1차위반시 시정명령, 2차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4. 일반음식점의 메뉴판에는 제주 흑돼지삼겹살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 제주도산이 아닌 다른 지역 흑돼지일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나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7.커목에 따라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주재료 등에 오인·혼동이 이는 메뉴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원산지)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II.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0.가)8)에 영업정지 7일(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5.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커피를 판매할 수 있나요?**

- 일반음식점이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Q 6.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구입한 떡국떡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 일반음식점에서 표시 완제품 떡국떡을 덜어서 영업장 내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접객행위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포장·판매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추가 영업신고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당해 영업행위가 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주로 판매하기 위하여 표시 완제품을 소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Q 7. 일반음식점의 상호명으로 커피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7.식품접객업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사목에서는 ‘간판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상호를 보고 업종 인식의 혼동을 느끼는 주체는 소비자이므로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상호를 보고 타 업종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일반음식점 상호명의 일부로 ‘커피’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8. 일반음식점에서 간헐적으로 영업주 및 관계자의 진행으로 손님이 무대나 좌석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할 수 있나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17] 7.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타.2) 및 7)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8.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1)라)에 따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노래행위를 허용할 경우 업종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방(노래연습장) 영업 간 이해상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손님의 노래 행위를 영업장 내에서 적법하게 하고자 할 경우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하지 않고 공연자가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공연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9.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 매대를 설치하여 진열 판매할 수 있나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1.정의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장에서 조리한 빵류 등 조리식품은 해당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여야 하며 영업장 외의 장소에 진열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Q 10.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냉동제품에 과일 등으로 추가 토핑하여 쇼케이스에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영업장 내에서 취식토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냉동제품을 납품받아 과일 등으로 추가 토핑하여 조리한 식품을 쇼케이스에 진열·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공연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11.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종업원과 영업자 모두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나요?**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및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Q 12.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신고증을 매장 내에 보관해야 하나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 7.식품접객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목에서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에 따라 법 제10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1.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17]제6호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17]제6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10만원(1차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13. 일반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 할 수 있나요?**

- 일반음식점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되므로 주류를 판매 할 수 있으나 주류의 제조·판매는 주류제조업면허와 함께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이 필요하므로 주류를 제조·판매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일반음식점 내에서 고객요구에 따라 칵테일 제조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에 해당하지 않아 칵테일은 제조·판매할 수 있습니다.

**Q 14. 일반음식점에서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통보를 받았 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나오기 전에 폐업을 할 수 있나요?**

- 「식품위생법」제37조제8항에서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 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자가 ‘사전처분통지서’를 받는 등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이라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15. 일반음식점에서 배달앱 등으로 주문을 받아 조리식품을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조리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배달앱 등으로 주문을 받아 영업장에서 조리식품을 포장하여 택배 등으로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별도로 영업신고(등록)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16. 일반음식점 법인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지위승계와 변경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식품위생법」제39조(영업 승계)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영업자지위승계 신고)제1항에 따라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영업신고증,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한 사항이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표자가 A에서 B로 단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대표자 변경사항 신고에 해당합니다.

**Q 17. 고기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나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고기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 등에 적법하다면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18. 일반음식점으로 생맥주에 과실음료, 탄산, 시럽 등을 추가하여 맥주칵테일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나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 따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맥주칵테일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19. 영업장이 여러군데 일 경우 한명의 위생관리책임자가 정기교육을 한번만 받아도 되나요?**

- 식품영업자 교육을 영업자가 직접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받게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장의 종업원 중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장별로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 지회 · 지부 · 교육원 현황

중앙회	(02)6191-2900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87	04608
-----	---------------	---------------------	-------

지 회	전 화 번 호	도 로 명 주 소	우 편 번 호
종로구	02)396-27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55 하림각내 별관(부암동)	03021
중구	02)2233-537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62(신당동) 약수빌딩 601호	04590
용산구	02)796-873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8길 3	04382
성동구	02)2299-0091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5가길 27, 2층(마장동)	04759
광진구	02)446-885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59 (구의동) 대영아파트1동 B02호	05024
동대문구	02)966-808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51 청암빌딩2층	02645
종량구	02)491-2826	서울특별시 종량구 망우로 239(중화동) 가나안빌딩 1층 105호	02117
성북구	02)921-336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40길 5 (동소문동5가 8) 삼우빌딩4층	02846
도봉구	02)906-1691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55(방학동) 삼인빌딩 4층	01389
강북구	02)992-04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0 (3층)	01161
노원구	02)938-900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8 도영빌딩4층	01689
은평구	02)357-774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60(응암동) 경향렉스빌아파트상가204호	03462
서대문구	02)324-836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10 독립문삼호아파트 상가동 302호	03743
마포구	02)309-437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70-9(용강동)	04162
양천구	02)2601-885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70(신정동),3층	07945
강서구	02)2607-194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9길 5-10	07689
구로구	02)839-16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29 성보빌딩401호	08284
금천구	02)893-836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7길 23(시흥동, 시흥베르빌아파트 제상가동 3층 301호)	08610
영등포구	02)2068-75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19길 23-1 당산랜즈빌 301호	07261
동작구	02)826-50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길 4 (상도동) 3층	06959
관악구	02)875-3001	서울특별시 관악구 참숯1길 67(신림동) 2층	08829
서초구	02)587-0996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16	06709
강남구	02)544-24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4 호산프라자401호	06097
송파구	02)414-13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13(방이동) 씨티빌딩 4층 402호	05548
강동구	02)477-373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85(성내동) 경성빌딩3층	05396
부산시	051)863-030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3-3	48731
대구시	053)353-9601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9-8(침산동) 3층	41590
인천시	032)429-5111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서해빌딩 6층	21558
광주시	062)374-8434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7 601호(치평동)	61962
대전시	042)488-0985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95(갈마동) 1층	35273
울산시	052)247-9389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2길 22-10 2층	44933
경기도	031)246-60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14	16233
강원도	033)253-1838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06 3층	24355
충청북도	043)256-644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도광빌딩3층)	28540
충청남도	041)563-4416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아르페온 2차 608호	32263
전라북도	063)254-598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 3 양한빌딩 5층	54962
전라남도	061)284-0361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46-1 (양우비치팰리스 206호)	58748
경상북도	053)742-0406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77(효목동), 4층	41230
경상남도	055)292-843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8 (2층)	51376
제주도	064)722-21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0, 203호	63118

교 육 원	전화번호	도 로 명 주 소	우 편 번 호
중앙교육원	02)6191-2902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87	04608
부산교육원	051)863-030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3-3 금정빌딩 2층, 3층	48731
대구교육원	053)353-9604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9-8(침산동) 3층	41590
인천교육원	032)429-5111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서해빌딩 6층	21558
광주교육원	062)374-8434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7 601호(치평동)	61962
대전교육원	042)488-0985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95(갈마동) 1층	35273
울산교육원	052)247-9574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2길 22-10 2층	44933
경기교육원	031)241-599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14 (2층)	16233
강원교육원	033)255-7559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06 3층	24355
충북교육원	043)256-641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도광빌딩3층)	28540
충남교육원	041)563-4416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아르페온 2차 608호	32263
전북교육원	063)254-598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 3 양한빌딩 5층	54962
전남교육원	061)284-0361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46-1 (양우비치팰리스 206호)	58748
경북교육원	053)742-0406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77(효목동)	41230
경남교육원	055)292-843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8 (2층)	51376
제주교육원	064)721-99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0 조양상떼빌 203호	63118

구 분	전 화 번 호	도 로 명 주 소	우 편 번 호	
부산광역시지회	중 구	051-245-8918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 42 신동아빌딩 411호	48983
	서 구	051-244-9344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43-2, 3층	49234
	동 구	051-467-5790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29번길 10, 2층	48795
	영 도 구	051-413-3100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384번길 1, 2층	49016
	부 산 진 구	051-806-200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56-1 301호	47287
	동 래 구	051-553-3080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237번길 86, 2층	47809
	남 구	051-625-5518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19번길 12-10 3층	48445
	북 구	051-304-2244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581, 3층	46504
	해 운 대 구	051-746-877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10번길 12 새마을금고 2층	48096
	사 하 구	051-205-052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84 성호빌딩 6층	49329
	금 정 구	051-512-2282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2, 2층	46253
	강 서 구	051-972-2244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강서문화원2층 210호	46702
	연 제 구	051-853-5129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19번길 21, 3층	47596
	수 영 구	051-625-7014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32, 3층	48307
	사 상 구	051-328-60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8 2층	47000
	기 장 군	051-721-318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465-1, 2층	46072
대구광역시지회	중 구	053-255-5191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54(남산동) 4층	41968
	동 구	053-943-1741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8(검사동) 3층	41155
	서 구	053-562-4570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79(평리5동) 5층	41765
	남 구	053-476-9615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9-8(침산동) 2층	41590

구 분	전 화 번 호	도 로 명 주 소	우편번호
대구광역시지회	북 구	053-353-9616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9-8(침산동) 2층	41590
	수 성 구	053-766-439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44(중동) 4층	42134
	달 서 구	053-527-9606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45(본동) 3층	42729
	달 성 군	053-611-733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130길 20(원교리) 3층	43003
인천광역시지회	중 구	032-772-8612 인천시 중구 신포로23번길 69-1	22314
	동 구	032-773-8327 인천시 동구 금곡로 56-1 2층	22563
	미 추 홀 구	032-864-8831 인천시 남구 경인로 321 수림빌딩 5층	22139
	연 수 구	032-817-0031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197 이리움2프라자 3층	21926
	남 동 구	032-425-7300 인천시 남동구 오봉로 2 도림프라자 6층(도림동)	21656
	부 평 구	032-517-1581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29 로얄빌딩 804,805호	21360
	계 양 구	032-551-1581 인천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유연프라자 601호	21069
	서 구	032-563-4295 인천시 서구 탁옥로 90 덕산빌딩 3층	22711
	강 화 군	032-932-1145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8 2층	23041
	웅 진 군	032-551-1581 인천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유연프라자 601호	21069
광주광역시지회	동 구	062-223-7728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138번길 14-1(장동)	61431
	서 구	062-382-5551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00번길 2, 2층(쌍촌동)	62032
	남 구	062-653-2626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54번길 8(백운동 벽산아파트B동상가 401호)	61647
	북 구	062-525-865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106(중흥동)	61216
	광 산 구	062-954-74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21, 3층(월곡동)	62333
대전광역시지회	동 구	042-283-1614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75 7층(가오동)	34680
	중 구	042-253-2411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62번길 24 (대흥동), 3층	34912
	서 구	042-523-4393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95 2층	35273
	유 성 구	042-862-656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10번길 50(봉명동)	34175
	대 덕 구	042-633-4415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55번길 40 (오정동, 대덕맨션)	34443
울산광역시지회	중 구	052-247-2454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500, 2층	44475
	남 구	052-271-2289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40번길 18 2층	44740
	동 구	052-234-1123 울산광역시 동구 학문로 93 2층	44061
	북 구	052-289-413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94 2층	44244
	울 주 군	052-263-2677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서상평길 18 2층	44949
경기도지회	수원시장안구	031-246-888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3(송죽동 송죽빌딩 3층301호)	16306
	수원시권선구	031-253-002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49 (탑동 화신타워)	16607
	수원시팔달구	031-235-89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533번길 7, 4층	16481
	수원시영통구	031-212-558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83번길 37, 2층 201호	16676
	성남시수정구	031-734-234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14번길 6, 208호	13346
	성남시중원구	031-751-06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80(중앙동, 3층)	13246
	성남시분당구	031-701-68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2 삼부빌딩 302호 (야탑동)	13522
	의 정 부 시	031-846-2616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40, 4층	11626

구 분	전 화 번 호	도 로 명 주 소	우편번호
경기도지회	안양시만안구	031-466-59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55 (안양6동) 동아빌딩 7층	14034
	안양시동안구	031-466-840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76(비산2동) 정화빌딩 3층	13955
	부천시 중부	032-662-441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05, 2층(창우빌딩)	14641
	부천시 남부	032-673-399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66 하나빌딩 301호 3층	14421
	광 명 시	02-2625-6633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 525, 3층	14314
	평 택 시	031-654-3531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114번길 58(비전동) 3층	17885
	동 두 천 시	031-865-234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170-2 (2층)	11328
	안산시단원구	031-485-696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길 57 (고잔동 금산빌딩 401호)	15361
	안산시상록구	031-438-26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58 에이스프라자206호	15495
	고양시덕양구	031-964-272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55 보훈회관 5층	10455
	고양시일산구	031-906-166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103-6, 2층	10311
	과 천 시	02-502-2937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66-10 종교빌딩 3층3호 33~36호	13834
	구 리 시	031-551-0090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6(교문동) 302호	11935
	남 양 주 시	031-592-5129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다남프라자 314호	12239
	오 산 시	031-373-6139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38번길 1	18141
	시 흥 시	031-318-4344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68번길 31 대성빌딩 4층	14998
	군 포 시	031-458-3565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3(2층)	15827
	의 왕 시	031-458-4323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27 영남빌딩 402호(고천동)	16076
	하 남 시	031-791-1444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3(6층)	12950
	용인시처인구	031-335-361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마평동) 종합운동장내 2층	17152
용인시수지구	031-263-361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40번길 19 한터빌딩 302호	16835	
용인시기흥구	031-281-018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72번길 10-1 (404호)	16972	
파 주 시	031-941-2015 경기도 파주시 금정로 48 (금촌동, 고주영법무사 3층)	10929	
이 천 시	031-633-3353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72(창전동)	17368	
안 성 시	031-675-2932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86번길 32	17593	
김 포 시	031-984-3611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41, 경동미르웨시티 481, 482호	10090	
화 성 시	031-295-0213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병점프라자 203호	18411	
광 주 시	031-761-2427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4 2층	12759	
양 주 시	031-858-7070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32 양주프라임타워4층 404호(광사동)	11492	
포 천 시	031-535-0123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병로 5 (2층)	11154	
여 주 시	031-884-2216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173(월송동94-2)	12644	
연 천 군	031-832-2114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1, 2층	11028	
가 평 군	031-582-440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보납로6번길 13-1	12418	
양 평 군	031-771-250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78	12555	
강원도지회	춘 천 시	033-254-290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40 3층	24272
	원 주 시	033-744-9311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53, 5층(일산동)	26417
	강 릉 시	033-648-1112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67번길9, 2층	25546

구 분	전 화 번 호	도 로 명 주 소	우편번호	
강원도지회	동 해 시	033-535-8230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38	25769
	태 백 시	033-552-2171	강원도 태백시 광장로 7 2층	26006
	속 초 시	033-633-2439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35-1	24835
	삼 척 시	033-574-8284	강원도 삼척시 사대안2길 26-2	25921
	홍 천 군	033-434-248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피로 86	25136
	횡 성 군	033-343-880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정로 34	25231
	영 월 군	033-374-518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133 2층	26229
	평 창 군	033-332-292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26-23	25375
	정 선 군	033-562-115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3길 9	26128
	철 원 군	033-452-320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23-2, 2층	24034
	화 천 군	033-442-2561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6길 29-8	24128
	양 구 군	033-481-2137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73	24531
	인 제 군	033-461-236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12	24635
	고 성 군	033-682-290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쇠룽골길 17	24730
	양 양 군	033-671-8827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65 2층	25032
충청북도지회	청주시상당구	043-254-18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32, 4층	28763
	청주시서원구	043-908-2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23 영화빌딩 5층	28566
	청주시흥덕구	043-267-7243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23 영화빌딩 3층	28566
	청주시청원구	043-259-361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28 내을새마을금고 5층 502호	28481
	충 주 시	043-847-6695	충청북도 충주시 교동16길 2(교현동)	27379
	제 천 시	043-646-8362	충청북도 제천시 원화산로 84(화산동)	27197
	보 은 군	043-544-3964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515 (거성@ 상가 1층)	28948
	옥 천 군	043-732-316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47	29035
	영 동 군	043-745-7003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4길 17	29146
	진 천 군	043-533-060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293, 2층	27838
	괴 산 군	043-832-2069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27-8, 크로바회관 1층	28034
	음 성 군	043-872-4777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길 23	27697
	단 양 군	043-423-2147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2길 48	27013
	증 평 군	043-836-4393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아랫장뜰길 46	27936
	충청남도지회	천 안 시	041-551-335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8, 3층
공 주 시		041-855-5366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24 서우마트2층	32567
보 령 시		041-935-6759	충청남도 보령시 희망1길 102-24(2층)	33468
아 산 시		041-545-8982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05-2(3층)	31511
서 산 시		041-665-4408	충청남도 서산시 읍지3로 5(3층)	31992
논 산 시		041-734-4022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7	32988
계 룡 시		042-841-4410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전원로 5-4(2층)	32805
금 산 군		041-754-6735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오리정1길 48, 금산축협 2층	32737

구 분	전 화 번 호	도 로 명 주 소	우편번호		
충청남도지회	세 종 시	044-865-291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2길 73-2	30025	
	부 여 군	041-835-285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52	33154	
	서 천 군	041-953-1332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81번길 7	33646	
	청 양 군	041-943-3774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1-1	33331	
	홍 성 군	041-632-6019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4번길 32, 301호	32226	
	예 산 군	041-335-544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뱃골로 149-4 예흥빌딩 2층	32428	
	태 안 군	041-672-3906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독샘로 42	32143	
	당 진 시	041-355-4735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3로 14 (조항빌딩 3층)	31777	
	전라북도지회	완 산 구	063-221-558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4길 11	55051
		덕 진 구	063-277-578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한매미로34 (현성빌딩2층)	55030
군 산 시		063-453-6431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안길 21	54079	
익 산 시		063-858-4582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7길 71	54601	
정 읍 시		063-535-2994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로 36	56160	
남 원 시		063-625-4442	전라북도 남원시 동헌길 110	55770	
김 제 시		063-547-6789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00	54407	
부 안 군		063-584-4802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35	56308	
고 창 군		063-564-321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95-14	56434	
진 안 군		063-433-3075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17	55430	
완 주 군		063-291-4565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8 KT전북본부	55342	
임 실 군		063-643-4238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8길 4-4	55926	
전라남도지회	목 포 시	061-282-8184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로 22-18 펠리시티몰 E동 502호	58682	
	여 수 시	061-682-5777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1길 32	59674	
	순 천 시	061-744-5007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1길 30-18(2층)	57956	
	나 주 시	061-332-9234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49	58263	
	광 양 시	061-793-644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95	57786	
	담 양 군	061-381-2518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9길 5	57339	
	곡 성 군	061-363-394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4길 14 (사회복지회관 3층)	57542	
	구 례 군	061-782-5188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로 106 (공설운동장 2층)	57635	
	고 흥 군	061-835-5303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두원로 74	59540	
	보 성 군	061-852-3849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인사길 7	59455	
화 순 군	061-374-099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34	58118		
장 흥 군	061-862-4547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55(군민회관 2층)	59327		
강 진 군	061-434-357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문길 13	59229		
해 남 군	061-536-4805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로 96 (2층)	59027		

구 분	전 화 번 호	도 로 명 주 소	우편번호	
전라남도지회	영 암 군	061-473-0020	전라남도 영암읍 영암읍 남문로 18	58417
	무 안 군	061-452-8809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1길 108	58521
	함 평 군	061-322-1691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시장길 92	57152
	영 광 군	061-351-265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21	57036
	장 성 군	061-393-6312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30-1 2층	57219
	완 도 군	061-554-35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 6(상가 2층)	59123
	진 도 군	061-544-358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성내길 13	58915
	신 안 군	061-242-8723	전라남도 목포시 수강로3번길 14	58753
경상북도지회	포 향 남 구	054-282-415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65(상도동)	37765
	포 향 북 구	054-244-0171	포항시 북구 삼호로203번길 22(두호동)	37729
	경 주 시	054-771-3901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성동동)	38138
	김 천 시	054-434-3169	경상북도 김천시 고래실길 8(부곡동)	39637
	안 동 시	054-857-7657	경상북도 안동시 단원로 74(2층)	36648
	구 미 시	054-458-8100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37길 9(원평동)	39232
	영 주 시	054-631-4374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406(영주동)	36096
	영 천 시	054-332-3393	경상북도 영천시 왕평길 28-14(교촌동)	38844
	상 주 시	054-535-6559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2길 112(남성동)	37211
	문 경 시	054-555-5193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142-1(점촌동)	36968
	경 산 시	053-815-3152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46(사정동)	38677
	군 위 군	054-383-3540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31-10	39018
	의 성 군	054-834-4625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복원4길2(2층)	37335
	청 송 군	054-873-4408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56(월마리)	37430
	영 양 군	054-682-260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낙원로 53(서부리)	36536
	영 덕 군	054-732-7788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05(덕곡리)	36433
	청 도 군	054-373-265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229(고수리)	38341
	고 령 군	054-955-5812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시장길 42(지산리)	40137
	성 주 군	054-931-190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46(예산리)	40029
	칠 곡 군	054-973-073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7길 6(석전리)	39876
예 천 군	054-654-2194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역전길2	36826	
봉 화 군	054-673-3630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34(내성리)	36238	
울 진 군	054-783-2042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36(3층)	36324	
경상남도지회	창원시의창구	055-283-443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84(신월동, 1층)	51443
	창원시성산구	055-282-166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84(신월동, 2층)	51443
	창원시마산합포구	055-224-496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509 (회원동, 5층)	51289
	창원시마산회원구	055-224-496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509 (회원동, 2층)	51289
	창원시진해구	055-546-600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61번길 31, 2층	51647
	진 주 시	055-761-176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2-1(상대동) 삼우빌딩 3층	52795

구 분	전 화 번 호	도 로 명 주 소	우편번호	
경상남도지회	통 영 시	055-644-0336	경상남도 통영시 장골로 39 (3층)	53058
	사 천 시	055-833-7301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152(벌리동, 수협북부지점 2층)	52559
	김 해 시	055-336-7129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55번길 30 (2층)	50925
	밀 양 시	055-356-4714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 13 (내이동, 2층)	50419
	거 제 시	055-635-301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9 왕주빌딩 지하층	53290
	양 산 시	055-385-4700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 3길 27-1 (북부동, 3층)	50619
	의 령 군	055-573-4216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22 (서동리, 3층)	52148
	함 안 군	055-582-009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33 (3층)	52043
	창 녕 군	055-533-2238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9 (2층)	50323
	고 성 군	055-672-373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1 (3층)	52941
	남 해 군	055-864-679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57	52417
	하 동 군	055-884-385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길 1 (2층)	52329
	산 청 군	055-973-3435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79번길 31-3(1층)	52220
	함 양 군	055-963-330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73(반월빌딩 3층)	50034
거 창 군	055-944-418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1(중앙리) 고센시티4층 403호	50133	
합 천 군	055-931-243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92 (2층)	50232	
제주도지회	제 주 시	064-752-456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로 116	63191
	서 귀 포 시	064-763-606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442번길 5-5	63595



## **위생교육교재** (일반음식점영업자)

---

발행일 : 2020년 2월

발행처 :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87

TEL. (02) 6191-2905

FAX. (02) 6191-2995

인쇄처 : 화신문화(주) 02)2277-0624

---

※ 발행처 허락없이 책자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함